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都市空間의 形成過程에 관한 考察

梁 尚 湖

(正會員, 명지대·경원대 講師, 工博)

1. 序

본 고찰은, 韓國都市의 現 모습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近代時期의 都市에 대한 연구의 하나이다.¹⁾ 구체적으로는, 近代以前時期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都市, 즉 韓國近代²⁾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開港場居留地 중에서, 제4의 開港場인 木浦의 各國共同居留地를 대상으로 한 史的 고찰이다. 居留地는 국가간의 條約에 의하여 돌연 한 지역이 설정되어, 주로 무역통상을 위한 都市的 기능을 갖추고 外國人만이 거주하는 특별한 都市이었다. 따라서, 居留地는 都市가 갖는 체계나 형태, 성격 등 모든 면에서 기존의 都市와는 다르게 된다. 이러한 이질적인 都市가 朝鮮國領土 위에 새롭게 형성되었음은 歷史的으로도 의미를 갖게 하며, 또한 그것들이 현재 大都市로 성장해 있다는 점에서는 現實的으로도 흥미로운 일이다.

본 고찰에서는 居留地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開港 이후 1910년까지)를 중심으로, 설정 경위

를 비롯, 都市로서의 形態를 구성해 가는 과정 등에 대하여 實證的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可視的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자료의 분석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그 한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은, 都市史의 研究³⁾에서 建築史學이 재시해

2) 본고에서의 韓國近代에 대한 정의는, 韓國歷史의 특수성에 대한 감안에 의하여, 서구의 역사개념인 'Moder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기구분을 위한 편의에 따라 現在와 가까운 過去의 시기라는 時間의 意味만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開港 이후 1950년까지를 지칭한다. 또한, 'Modern'과 같은 概念的 의미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특별히 '西歐近代'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3) 실제로, 都市史研究는 각 학문분야에서 研究方法의 수단으로 채택되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19세기초반 중세도시의 자치운동이 이상화되고, 19세기초에 성립한 독일의 歷史學派가, 中世都市의 성격의 중요한 요인인 都市의 自治制度에서 獨逸法의 機構를 찾으려고 都市의 成立과起源에 초점을 맞춘 法制史에서의 都市史研究가, 서구근대적인 연구의 시초가 되고 있다. 그 후 도시의 社會經濟문제를 강조하는 歷史經濟學의 성립이나, 웨버나 좀바르트등에 의한 都市論의理論화가 이루어 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都市

1) 본고는, 拙著, 「韓國近代의 都市史研究」, 『東京大博士學位論文』, 1993.12.21의 해당부분을 개정보완한 내용임.

야 하는 영역이나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은 현상황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2. 開港場居留地의 設定經緯

1894년 7월 23일, 朝鮮國에 無斷으로 出兵하여 王宮에 침입하는 등, 日本軍의 무력적 시위속에서, 朝鮮政府내의 親日開化派가 중심이 된 內政改革인 「甲午更張」이 일어나지만, 外勢依存에 의한 内部基盤의 미약등으로 중도에 좌절하는 결과

의 歷史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都市史는 하나의 方法的인 입장인 것이며, 도시가 갖는 多樣性이나 多面性에 의하여 새로운 歷史認識을 획득하고, 새로운 歷史理論을 찾아내며, 새로운 歷史事實을 발굴해 가는 方法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都市를 구성하는 요소중에는 都市空間(형태와 경관을 포함한다)이란 장르가 있어서, 建築과의 接點을 제공하고 있다. 그 空間이란 物理的인 공간, 容器로서의 공간, 또 人間의 生活이 이루어 지는 場所로서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都市空間을 建築行爲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해 가는 것은 建築史學에서의 어프로치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韓國近代의 建築史를 서술할 때, 侵略의 歷史인 日本人들의 建築行爲에 대하여 点的인 시야가 아닌 面的인 시야로 접근하려는 태도가, 韓國近代의 歷史認識面에서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面的인 시야에서의 접근태도는 都市空間을 인식해 가는 방법과 중첩되는 점이 많다. 아리하여, 建築史學에서 都市史를 다루어야 하는 當爲性이 나오는 것이다. 都市史를手段으로 하는 韓國近代의 建築史研究가 이루어질수 있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단지, 현재의 입장은 韓國近代建築史에서의 都市史研究가 매우 일천한 상태이므로, 都市의 形成過程이나 形態等의 규명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장차 여러 都市의 形態나 形成過程이 實證的으로 규명되어, 그 性格과 歷史的 意味가 판명이 될 때에 建築史의 인解釋이 가능해 지리라 생각하는 것이며, 또한 建築史學에서의 都市史研究가 뚜렷한 領域을 확보하고, 그 方法論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로 끝난다⁴⁾. 그런데, 이 당시 日本政府는 朝鮮政府와의 사이에서 「暫定合同條款⁵⁾」을 맺어, 京仁·京釜鐵道의 敷設權을 확보하는 등, 한층 많은 經濟的인 利益을 도모한다. 이 「暫定合同條款」에서 全羅道의 沿岸에 通商港을 열 것을 정하는데, 이것이 木浦를 開港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1894년 8월 20일 「暫定合同條款」의 調印後인, 1895년 1월 日本公使는 開港대상지의 實地測量調査를 실시하여 木浦를 最適地로 内定해 놓는다⁶⁾. 그러나, 그후 朝日양국의 교섭에서는 開港을 内定하는 단계에 이르면서도⁷⁾, 1895년 4월의 이른바

- 4) 甲午更張에 대하여는, 渡學部編, 「朝鮮近代史」, 勸草書房, 東京, 1983.4(제10쇄), 58-60쪽과 山邊健太郎, 「日韓併合小史」, 「岩波新書587」, 岩波書店, 東京, 1969.12(제5쇄), 98-108쪽을 참조.
- 5) 이것은, 後日 條約으로써 違行할 것을, 1894년 8월 20일 양국대표가 調印한 것으로, 전 7개項目으로 되어 있다. 이 條款의 解決에 의하여, 朝鮮國의 自主獨立를 확인하고, 朝日間의 무역을 위하여 兩國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朝鮮國내에서의 利權外交의 상황에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經濟的인 利得을 확보하고자 했던 日本政府의 意圖가 표출된 것이기도 하다.
- 6) 이 때, 日本政府에서 木浦를 '開港地로서의 最適地' 운운하고 있으나, 以前에는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즉, 元山의 開港결정후인 1877년 11월, 제3의 開港地를 정하는 과정에서 木浦를 포함한 普通地 4개소에 대하여 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木浦에 대해서는 木浦灣안에 船舶를 정박시키기에는 좋하지만, 釜山과의 거리(약150海里)가 너무 가깝고, 근방에 羅州를 제외하고는 큰 시장이 없고, 게다가 航路인 鳴洋津(珍島와 海南사이의 해협)은 협하기 때문에 開港을 위한 最良의 지역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 하여, 開港場으로서의 不適當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1877년 12월에는 日本 陸軍省의 海津三雄, 下村修介를 시찰시키는데, 그들 또한 마찬가지의 의견을 내고 있다(下村修介, 「內閣文庫:明治10年朝鮮紀事」).
- 7) 日本政府는 韓半島의 南西岸을 조사하여 木浦를 선정한 후에, 木浦開港에 대하여 親日的인 人脈의 朝鮮政府와 온밀한 교섭을 벌일 때, 일찍부터 大同江入口의 良港으로 주목해 온 鎮南浦까지 포

「三國干涉」 이후 日本의 外交的 弱勢에 따라 開港문제를 표면화시키는 일은 어렵게 된다⁸⁾.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日本政府는 1894년12월 12일부터 駐京城日本領事館의 一等領事인 内田를 木浦等地로 시찰시켜 報告書를 내게 하고 있다⁹⁾. 그후 언제 朝鮮政府가 木浦의 開港을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896년10월30일에는 仁川海關長 오스본(W.McC.Osborne, 영국인)과 測量士 아부어 (W. Armour, 영국인, 후에 初代木浦海關長)가, 朝鮮政府의 지사로 木浦의 開港준비를 위하여 當地를 방문하고 있다. 이 때에 仁川의 日本領事館의 書記가 동행하여 「木浦觀察報告書」를 내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表面的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日本政府는 은밀하게 開港결정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開港의 준비를 마친 朝鮮政府는, 1897년 7월3일 議政府會議에서 동년10월1일부터 木浦와 鎮南浦의 開港을 의결하고, 이를 날 各國使臣들에게 이를 통지한다¹¹⁾. 그리고, 7월12일에 開港에 관한 사항을 官報에 실어 公表한다. 이러한 朝鮮政府 스스로의 宣言·公表에 의한 開港은, 條約에 의했던 이전의 開港과는 형식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지만, 居留地의 설정등의 내용을 보면, 이전의 開港과 그다지 다른 게 없는 것이다¹²⁾. 이 開港公表에 따라, 木浦등의 開港事務를 朝鮮海關이 맡는 한편, 總稅務司 브라운이 초안한 居留地章程案을 가지고 朝鮮國外部와 各國使臣간의 절충이 이루어 진다. 그 후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測量地圖가 제작되고, 1897년10월16일 漢城에서, 「鎮南浦木浦各國租界章程(Regulation For The Foreign Settlement At Chinnampo and Mokpo)」을 朝鮮國外部大臣과 日·美·러·佛·英·獨의 各國代表가 조인한다. 본 章程은, 居留地의 구역, 海壁과 埠頭, 地區의 區分 및 面積, 地區의 賣却, 地區의 原價 및 賣却貨價의 分配, 地租와 南北방법, 채납의 처분, 地租의 分配, 朝鮮家屋의 철거, 樹木의 채벌, 官有地區, 地主의 자격, 地券의 書式 및 交付

함하여, 1895년6월1일부터 開港할 것을 정해 놓고 있었다. 奧平武彦, 「朝鮮の條約港と居留地」, 岩波書店, 1937.5, 동경, 109쪽을 참조.

- 8) 清日戰爭에서의 유리한 전개로, 朝鮮國에서의 外交의 主導權을 장악하기 시작한 日本이었지만, 1895년4월의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3國에 의한 이른바 '三國干涉' 및 동년 10월의 '閔妃暗殺事件', 또 1896년2월 高宗의 '俄館播遷' 등으로, 外交의 主導權은 러시아에게 넘어간다. 그러한 상황에서, 朝日兩國政府사이에 내정되어 있던 木浦등의 開港問題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그대로 보류된다. 日本의 朝鮮國에서의 이러한 外交的 弱勢狀態는 1896년5월1일 漢城에서의 朝鮮문제에 관한 「러日覺書(일명, 小村, 웨버覺書)」, 또 뒤이은 6월9일 모스크바에서의 「러日議定書(일명, 山縣, 로바로프協定)」의 調印에 의하여,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된다. 이후, 러시아가 朝鮮國내에서 軍事的 세력의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日本의 外交的 弱勢는 계속되지만, 經濟의 利權을 획득하는 일에는 여전히 帝國主義의 작용을 강화해 간다. 이러한 朝鮮國에서의 侵略의 행위는 러日戰爭시까지 계속되고 결국은 日本의 독무대가 되어, 朝鮮國은 被保護國으로, 나아가 植民地로 전락해 가는 것이다. 山邊健太郎, 「前揭書」, 118-46쪽, 渡學部編, 「前揭書」, 63-4쪽, 姜在彥, 「韓國近代史」, 한울出版社, 1990.3, 서울, 94-21쪽등을 참조.
- 9) 日本外務省記錄, 「古阜灣及木浦港觀察復命書」, 「京城領事館報告」, 1895.1.31
- 10) 日本外務省 記錄, 「在仁川書記生前間恭作木浦觀察報告, 1896.11.11」, 「仁川領事館報告書, 公第218號」, 1896. 11.17자, 를 참조.
- 11) 당시 朝鮮國에서 外交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러시아公使 웨버(C. Waeber)는, 이미 開港한 3港이외의 開港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朝鮮政府의 總稅務司(1893.10-1904.4)겸 度支部顧問(1896.4-1904.4)이며, 당시 朝鮮政府의 재정관계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브라운(John McLeavy Brown; 柏卓安, 영국인)이, 開港은 관세수입의 증가를 가져와 財政의 악화를 피할 수 있다고 역설하는 한편, 各國代表들도 木浦 및 鎮南浦의 개항에 찬동을 표하게 되므로, 朝鮮國外部大臣署理와 日本公使와의 은밀한 교섭의 결과, 개항이 내정된다. 그 내용은, 1897년7월3일의 議政府會議에 상정되어 가결된다. 그 議決의 내용은, 1) 日本은 이번 개항의 率先者가 되므로, 그 일을 기록으로 남길 것. 2) 木浦, 鎮南浦의 開港은 금년10월1일에 실시할 것. 3) 通商規定 및 居

手續, 地區의 재매각, 地區의 분할, 건축의 규칙, 居留地會의 구성·체계·職權 및 職務 등을 정하는 등, 全 18개조항 및 居留地地圖로 구성되고 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仁川居留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 개정된 것이 되고 있다.

본 章程의 내용을 市街地空間의構成과 관계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海壁과 埠頭의 건설 및 유지보수는 朝鮮政府가, 또 부두의 화물작업장은 세관업무에 한하여 朝鮮政府의 관할로 하지만, 點燈과 警察사무는 居留地會에서 맡는다(제1조).
- * 居留地의 地區은 3종류로 하여, 甲지구는 村落 논밭 또는 埋立을 요하지 않는 低地域, 乙지구는 穀稼지역, 丙지역은 埋立을 요하는 海岸地域으로 한다(제2조).
- * 각지구별로 競賣面積의 上限과 下限의 制限을 두어, 甲·丙지구는 1000m²-500m²(308평-154평), 乙지구는 5000m²-1000m²(1540평-308평)으로 한다(제3조).
- * 宅地原價는 100m²당 甲지구 6불, 乙지구 3불, 丙지구 5불로 하여 朝鮮政府에 귀속되나, 競賣에 따른剩餘額은 居留地會에 귀속된다(제5조).
- * 1년地貢는 100m²당 甲·丙지구는 6불, 乙지구는 2 불로 하고, 朝鮮政府의 代理者로써의 居留地會에 납부한다(제6조). 地貢은, 지구에 관계없이 100 m²당 30센트의 금액은 朝鮮官廳에, 나머지는 居留地會의 수입이 된다(제8조).
- * 競賣宅地내의 朝鮮家屋과 墳墓는, 宅地競賣의 낙찰 또는 도로포설의 고지후 1개월이내에 철거하고, 居留地내의 모든 朝鮮家屋과 墳墓는 2년이내에 철거한다(제9조).
- * 未賣地區 또는 도로부지위의 樹木은 居留地會의 동의없이는 제벌할 수 없다(제9조).
- * 朝鮮政府의 稅關用 청사, 창고, 관사의 數地는 居留地내에 둘 수 있으나, 다른 부지와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條約國政府는 領事館數地로서 原價만을 납부하고 적당한 지구를 구입할 수 있으나, 地貢과 宅地原價는 동종의 地區와 동일한 의

留地制度는 議案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등이다. 이 의결내용이 러시아公使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했는지, 當日밤에 國王의 裁可를 받아, 이를 날인 4일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의결내용을 各國公使에게 통지하였던 것이다. 奧平武彥, 「前揭書」, 110-111쪽을 참조.

무를 부담한다(제10조).

- * 地主가 될 수 있는 자는, 본 章程을 승인한 使臣 所屬國의 政府, 臣民 또는 人民뿐이다(제11조).
- * 地區의 費却 및 議渡가 가능하고, 地區의 最小面積制限의 許容面積내의 分할도 가능하다(제12조).
- * 宅地의 낙찰자는, 地券의 교부일부터 2년이내에 250불이상의 建築費로, 新築 또는 改築을 해야 한다¹³⁾. 또 家屋은 전부 기와나 철제 또는 그의 불연재료의 지붕이어야 한다(제13조).

이 章程의 특징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奧平武彥, 「朝鮮の條約港と居留地」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奧平의 指摘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대단히 특징적인 것은 강력한 권한을 갖는 居留地會(紳董公司)의 존재이다. 居留地의 관리권한이, 朝鮮政府의 宣言에 의한 開港場임에도 불구하고, 朝鮮政府측에는 거의 부여되지 않고, 居留地會에 집중되게 된 것이다. 居留地會는 法人으로 하여, 그 議員의 구성은 朝鮮政府官吏 1명, 同居留地 駐在의 各國領事, 地主중에서의 3명이하로 조직되고 있다. 또한, 居留地會와의 모든 소송에 대하여도 漢城의 法廷에서 재판하고 그 판결로 종결짓게 되어 있다(제15조).

居留地會의 직권 및 직무(제16조)의 大要를 들

12) 이에 대하여는, 孫禎睦, 「韓國開港期都市變化過程研究」, 일지사, 1982.10, 서울, 276쪽 및 83-85쪽에서, 中國의 開港場의 例와 비교하면서 詳述하고 있다

13) 「이 地券의 交付日부터 2년이내에 건축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仁川의 各國共同居留地의 상황, 즉 소수의 歐美人이 대부분의 宅地를 사모아, 인구면에서 다수인 日本人의 거주장소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한편, 사려고 하여도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日本居留民은 대단히 억울해 한다는 경향에서 비롯된 規程으로, 소수인에 의한 택지의 買占이나 건축의 지체등의 사태를 막아, 거류지의 조기발전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정대로의 건축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규정이 적용된 적이 없이 사실상, 空文化되어 버린다. 木浦誌編纂會編, 「木浦誌」, 목포, 1914.3, 18쪽을 참조.

면, 다음과 같다.

- * 職員이나 使用人의 선임 및 그 事務章程의 규정
- * 居留地내의 도로등의 公共施設의 건설 및 유지, 관리
- * 警察의 설치 및 유지
- * 居留地내에서의 모든 불법 행위자의 체포, 구류 및 처벌
- * 各國居留地의 공체발행
- * 地租의 징수에 있어서 朝鮮政府의 대리자
- * 직권수행을 위한 통칙, 세칙을 제정, 그 위반자에게 25불이하의 벌금을 과할수 있다.

이것을 보면, 그 권한은 대단히 강력한 것으로, 居留地내에서는 국적을 막론하고,立法權, 行政權, 司法權, 警察權이 미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居留地會의 권한의 비대함이나 불균형적인 조직의 구성은, 上記의 규정마저도 歪曲 또는 空文化해 버리는 폐단을 불러 일으키는 모순까지도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¹⁴⁾.

이와 같이, 朝鮮政府 스스로의 宣言에 의해 開港되는 경우에도, 그 居留地의 운용, 관리의 권한은 朝鮮政府측과는 멀어져, 條約國民(居留民)측에 專任되어, 自國領土로서의 주장은 미약한 것이 되고 만 것이다. 특히, 木浦의 경우와 같이, 宅地借主의 절대다수가日本人으로 구성되었던 상황에서는, 居留地章程이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어, 專管居留地는 커녕 Concession보다도 침략성이 강한 居留地가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居留地章程에 의한 居留地의 설치는 이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한나라의 居留民이 집중적으로 많은 경우는 그 나라의 일방적인 居留地 운영이 되어 버리는 것이었다. 즉, 이러한 居留地章程의 내용은, 日本政府의 적극적인 居留民移住의 유도에 따라 거류지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朝鮮의 居留地를 日本의 專管居留地

화하는데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本意아닌結果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3. 開港初期의 居留地 狀況

3.1 居留民戶口의 變動

1897년의 開港(木浦와 津南浦의 開港)은, 朝鮮政府의 開港宣言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역시 日本政府의 外交的 작용이 主導的이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他居留地의 日本居留民은 제4의 開港을 -釜山의 日本居留民은 木浦의 開港을, 仁川의 日本居留民은 津南浦의 開港을--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釜山居留地의 日本居留民의 木浦開港반대의사는 강력하여, 당시 釜山의 日本領事 加藤增雄마저도 木浦開港의 時機尚早論을 신문기자에게 피력할 정도였다¹⁵⁾.

그러나, 실제로 木浦의 開港이 정해지고 나서는, 開港日前부터 朝鮮各地의 상인이나 각居留地의 日本상인들이 찾아 들어 開業을 준비하는 일

15) 加藤領事는 「자신은 개항의 絶對反對論者가 아니라, 개항 자체에는 찬성이다. 단지, 개항의 前提로서 朝鮮國內의 運輸交通등의 개량과 朝鮮商人의 생산 및 구매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상황을 갖춘 다음에 적당한 지역을 개항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釜山이나 仁川등의 居留地상황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는 繁榮狀態에 끼어 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時機尚早論을 주장한다. 그러나, 1896년 5월 1일 그가 日本公使館의 代理公使로 轉任되어 개항문제의 실무를 담당하고서는, 개항의 교섭을 훌륭하게 성공시켰던 것이다. 또한, 木浦의 개항을 자랑하면서 편찬된 木浦誌에서도, 이 모순된 일에 대하여 「역시 기이하지 않다 아니할 수 없다.」라고 쓰고 있다. 또한, 같은 해의 鎮南浦開港에 대하여는, 木浦와 마찬가자로 仁川居留地의 日本居留民이 반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일을 생각하더라도, 日本政府는 居留民등의 의견과는 별도로, 政府의 平창주의적인 意志에 의한 獨단적인 결정에 따라 開港을 추진했음을 알 수가 있다.

14) 建築의 強制規定(주13을 참조)이나,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는 漢城의 法廷등의 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표 1.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戶口數(每年末 現)

年度	日本人			他國人		
	戶數	人口	戶/人	戶數	人口	戶/人
1897.10	16	83	5.19	/	清 4	/
				/	西 1	/
1897	45	206	4.58	/	清 4	/
				/	西 2	/
1898.11	253	987	3.90	/	清14	/
				/	西 2	/
1899	230	872	3.79	清 10	42	4.20
				西 3	6	2.00
1900.11	228	884	3.88	13	43	3.31
1901	251	931	3.71	28	53	2.94
1902	266	1045	3.93	22	48	2.18
1905	367	2020	5.50	清 22	67	3.05
				西 4	12	3.00
1906	556	2364	4.25	清 29	92	3.17
				西 3	10	3.33
1907	773	2851	3.69	29	83	2.86
1910	871	3494	4.01	清 27	75	2.78
				西 4	10	2.50
1911	1163	4726	4.06	清 39	111	2.85
				西 5	15	3.00

<참고>

居留地주변의 朝鮮人의 戸口數는, 1897 : 520호(2600인), 1902 : 790(3655), 1907 : 1078(5205)임. 木浦府編, 「木浦府史」, 1930.12, 木浦, 828쪽 참조.

<출전>

日本外務省記錄, 「韓國居留本邦人戶口月表」, 1897·1898·1900·1901·1902」

木浦府編, 「木浦府史」, 1930.12, 木浦, 828쪽
權村經次郎編, 「木浦案內」, 木浦商業會議所, 1921.6, 木浦, 3-4쪽에서 재편집

도 적지 않았다. 1897년 10월 1일의 開港當日은, 海關官吏 3인 및 雇用人 1인, 日本상인 6인의 外國人 10인¹⁶⁾에 의해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 10인이 외에도 開港前부터 이미 12인의 日本상인이 渡來하고 있고, 아직 택자가 없는 그들은 居留地地域 안의 朝鮮人가옥을 빌려서 지내고 있었다¹⁷⁾. 또, 10월 24일 木浦에 도착한 日本領事館의 직원들은, 임시로 木浦鎮의 萬戶廳 건물¹⁸⁾에서 10월 26일부터

16) 10인의 外國人은, 海關事務代理 W. 아무어(W. Armour, 영국인), 海關吏인 三島豈彥과 周世榕(淸國人), 海關下女 高橋フク, 鶴林獎業團 仁川本部의 特派員 山下次太夫, 山本好太郎, 大澤商會 木浦支店創立員 三浦茂次郎, 谷垣嘉市, 雜貨商 今井讓次郎, 과자商 二宮儀十郎이었다. 木浦誌編纂會, 「前揭書」, 1914.2, 목포, 29쪽을 참조.

표 2. 月別日本居留民數

年月	人口	增減
1897.10	83	-
11	153	+70
12	206	+53
1898.01	243	+37
02	309	+66
03	436	+127
04	702	+266
05	881	+179
06	981	+100
07	941	+40
08	943	+2
09	953	+10
10	987	+34
11	987	0

영사업무를 시작한다.

그런데, 日本人이외의 외국인은, 旨國의 영사관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¹⁹⁾이나, 혹은 日本政府의 비호아래 開港前부터 암도적 다수의 日本人이 開港場에의 거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점 등, 당초부터 타국인이 渡來하여 定住할 만한 분

17) 木浦誌編纂會編, 「前揭書」, 29쪽을 참조.

18) 木浦居留地는, 이전에 木浦鎮(木浦營)이라는 朝鮮水軍의 陣地가 있던 장소인데, 개항식전에는 40여戶의 촌락이 있었다. 1895년 全國의 陣營이 일제히 폐지되면서, 木浦鎮은 그해 이미 폐지되어 있었다. 孫順陸, 「韓國開港期都市變化過程研究」, 290-291쪽을 참조. 木浦鎮은 '萬戶'라는 장교계급에 의해 통솔되고 있었고, 그 청사를 '萬戶廳'이라 불렀다.

19) 日本이외에, 英國과 러시아가 領事館敷地로서의宅地를 확보해 두었지만, 領事館廳舍의 건설은 물론, 領事業務조차도 이루어 진 일은 없었다. 단지, 英國의 경우, 同國人인 木浦海關長 아무어에게 領事業務를 委託한 것이 전부였다. 각 領事館敷地의 면적은 日本領事館 47,968m²(약 14,530평), 英國 12,475m²(약 3,780평), 러시아 19,311m²(약 5,850평)이다.

표 3.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日本居留民의 本籍別 分布

1897년 10월		1897년 12월		1898년 12월		1899년 11월		1900년 9월	
총 83인		총 206인		총 987인		총 868인		총 877인	
長崎	23	長崎	63	長崎	257	山口	248	山口	223
山口	18	山口	46	山口	243	長崎	209	長崎	197
東京	10	佐賀	13	大分	76	大分	72	大分	66
福岡	4	大分	12	廣島	49	大阪	41	大阪	43
大阪 愛媛 佐賀	3	東京	10	熊本	41	廣島	37	熊本	35
兵庫 岡山 廣島 大分 鹿兒島	2	福岡	9	佐賀	40	福岡	31	東京	35
神奈川 千葉/茨城 愛知/島根 高知/熊本 京都 和歌山	1	香川/愛知 高知/愛媛 熊本	2	北海島 新潟 群馬 千葉 栃木 山梨 宮城 福島 岩手 山形 秋田	0	新潟 群馬 三重 山梨 岐阜 長野 宮城 福島 岩手 青森 山形 秋田	0	栃木 三重 山梨 岐阜 長野 宮城 福島 岩手 青森 山形	0

<출전> 日本外務省記錄, 「韓國居留本邦人戶口月表, 1897, 1898, 1899, 1900」에서 인용 및 재편집.

위기가 아니었다. 겨우, 開港이듬해인 1898년 2,3월부터 仁川居留地의 清國人 약간명이 到來하는 정도였다.

開港이후의 居留民의 戸口數를 國적별로, 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日本人의 本籍별로 각각 정리한 것이 <표1>, <표2>와 <표3>이다.

우선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은 日本人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인데, 그 반면에 他外國人, 특히 西歐人の 비율은 대단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日本人의 인구비는 항상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日本人數가 절대다수라는 점이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特장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開港하여 최초 1년간의 인구증가율이, 1200%에 가까운 폭발적인 增加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1년간의 인구변동을 月別로 상세히 보면, <표2>와 같다. 이를 보면, 開港 이듬해의 4월이 정점을 이

루고 있고, 7월이후의 증가율은 비교적 저조하여, 최초 10개월사이에 12배가까이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증가경향은, 後述하는 宅地競貸와 관계된다고 생각된다. 그후, 開港 2년째부터의 인구증가는 비교적 느슨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주로 日本人의 이주에 따른 것으로, 다른 開港場이나 日本國內에서의 이주이라 추측된다. 이것은, 日本政府의 朝鮮에의 이주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며, 당시 朝鮮의 開港場에서의 경제적인 매리트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표3>의 日本人居留民의 本籍別 분포를 보면, 지리적으로 韓半島과 가까워서 通交가 편리한 長崎縣이나 山口縣 등, 九州지방의 출신자가 집중적으로 많았음과, 반면에 지리적으로 먼 關東北部, 東北지방의 출신자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

표 4.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日本居留民의 職業別分布

년월(인구)	1위	2위	3위	4위	5위	총	건설	비고
1897.10 (83)	種別 인부	잡화	목수	무역	약업	17	/	여인숙
	人數 36	14	6	3	3	/	7	1
1897.12 (206)	種別 인부	잡화	목수	仲買	무역	21	/	어부
	人數 58	15	15	9	5	/	19	2
1898.01 (243)	種別 인부	목수	잡화	仲買	무역	24	/	농업
	人數 86	27	211	14	6	/	34	3
1898.04 (704)	種別 인부	목수	잡화	어부	仲買	53	/	술소매
	人數 202	67	58	48	30	/	90	11
1898.07 (941)	種別 인부	목수	잡화	仲買	석공	72	/	토목청부
	人數 245	104	58	34	22	/	157	10
1898.10 (987)	種別 인부	목수	잡화	仲買	석공	74	/	기와공
	人數 226	105	443	24	20	/	154	6
1899.01 (978)	種別 인부	목수	잡화	仲買	무역	67	/	도장공
	人數 222	92	67	29	20	/	138	2
1899.07 (897)	種別 인부	목수	잡화	석공	무역	83	/	재목상
	人數 241	52	41	31	19	/	99	2
1900.01 (869)	種別 인부	잡화	목수	무역	仲買	82	/	석공
	人數 217	40	34	24	23	/	78	22
1900.05 (873)	種別 인부	잡화	석공	목수	무역	90	/	전구상
	人數 217	35	27	25	19	/	72	1

<출전> 日本外務省記錄, 「韓國居留本邦人戶口月表」의 해당부분에서 인용 및 재편집

- #1. '인부'의 난에는, 일용인부와 잡용인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각각 반점도의 비율이었으나, 일용인부는 1899년경부터 急減한다.
- #2. '건설'의 난은 건설관계업종의 수인데, 목수, 석공, 미장, 나무꾼, 다다미공, 토목청부, 목재상, 기와공, 유리상, 도장공등이 있다.
- #3. '총'의 난은 출전자료에 기재된 전업종의 수를 나타낸다.
- #4. '비고'의 난은, 前回에는 나타나지 않았었던 새로운 업종, 특히 건설관련의 업종을 중심으로 실었다.

다. 이와 같은 출신별의 특징으로 부터, 居留地에의 이주는 다른 開港場居留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朝鮮과의 거래관계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建設關聯職種의 動向

前記와 같은 인구증가에서, 최초 1년간에 이미 居留地로서의 면모를 어느정도 갖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현상은, 거류민의 직업별의 분포에서 보면, 더욱 그러한 일면을 포착할 수가 있다. 日本居留民의 직업별분포를 최초

수년간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4>와 같이 된다. 이 표를 보면, 居留地로서의 특징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宅地競貸가 시작된 1898년 일찍부터 목수와 일용잡부등의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1899년 후반에는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표1>에서의 戶當 인구수가 가장 감소하는 1899년의動向과도 일치한다. 또한, 목수의 수와 병행하여 日庸人夫의 수가 감소해도 雜庸人夫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은,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건설의 수요가 적어져서 日庸인부의 공급과잉이 된

반면, 雜庸인부를 많이 필요로 하는 海壁工事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슷한 시기에 海壁工事에 필요한 石工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적하고 싶은 것은, 그 離合集散의 속도인데, 본격적인 宅地競貸가 시작된 1898년의 4월부터 6개월후인 10월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7개월후인 1899년7월에는 피크시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왜 건설관계의 인구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일까. 居留地의 신시가지의 건설에 앞서 모여든 건설관련의 사람들이 居留地내의 건축이나 시설등이 어느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난 후에는, 새로운 공사를 찾아 木浦居留地에서 떠난 것일까. 불과 1년여사이에 居留地의 건설이 어느정도의 진정국면에 들어 잤다는 것일까. 원래 목수105명이란 수가 居留地의 건설규모에 비해 너무 많아 건설업이 과열되었던 것일까.

그 의문에 답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다음의 <사진1>을 보면 어느정도의 추측은 가능해 진다. <사진1>은 1907년의 木浦居留地의 全景을 보여 주는데, 그다지 시가지 건설이 이루어 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1년남짓사이에 居留地의 건설이 이루어 졌으리라는 추측과는 어긋나게 된다.

결국, 그 原因으로 다음의 두가지 점이 생각될 수 있다. 즉,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市場論理에 따라, 木浦居留地의 건설시장규모에 적당한 사람 수로 조정되어 간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木浦居留地의 대공사인 海壁工事が 1899년4월 계약되어 6월부터 착공되는데, 이 공사와의 관계가 있으리라는 점이다. 建築工事는 부지가 있고나서의 일이므로, 埋立地가 많은 木浦居留地에서는 무엇보다도 海壁工事が 선결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海壁工事が 완성되는 것은 1901년 9월이므로, 본격적인 건축공사는 그 前後가 되리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1901년9월 海壁工事의 완성까지의 木浦居留地는 목수의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開港된 居留地에는 커다란 일터가 펼쳐지리라는 짐작만으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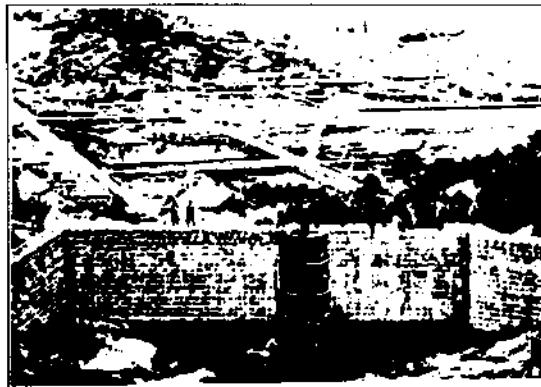


사진 1. 1907년의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全景

여들었던 목수들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의 상황과 만나게 되어, 다시 木浦居留地를 떠났다, 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또한, 海壁工事의 완공으로 택지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1901년 이후부터 거류민수가 증가하고 있는 통계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3.3 開港 당시의 住居狀況

위와 같은 건설의 경향을 생각하면, 開港初期에 모여든 250戶의 1000명가까운 인구의 住居는 어떻게 해결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開港초기의 어느 기간까지는 居留地안의 주거를 위한 建築은 많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1898년7월28일의 駐木浦 日本領事 久永三郎의 自國 外務次官앞으로의 公文書에서도, 「……(前略) 매립이 끝난 수십街區에서 가옥의 건축이 이루어져 지금은 그 수가 20여호에 이르고 있고, 계속 경영중에 있음(後略)……」라는 기록이 있는데, 총인구 941人인 時點에서 가옥수가 20여戶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居留民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을까. 그 의문을 풀어 줄 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居留地내외의 朝鮮人住宅을 賃貸하고 있었지 않았을까하는 점이다.

1897년당시, 주변의 朝鮮人마을의 인구는 2600명이라는 기록²⁰⁾이 있고, 永住가 아닌 경우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1899년4월25

일 계약된 海壁工事의 請負人の 保證代理人이었던 潘谷龍郎도, 계약서상의 주소를 '木浦各國居留地外居留'라 쓰고 있다²¹⁾.

居留地내외의 朝鮮人 가옥을 임대하여 사용하였음에 대한 증거자료는 충분치 않으나, 居留地내의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거주방법은 생각할 수 없게 된다.

3.4 居留地의 形成과의 관련사항

開港이전의 木浦는 군사적인 진지로써, 水軍의 「萬戶」가 주재하고 있던 지역이다. 萬戶廳을 중심으로 성곽이 둘러치고, 성곽내외에 약 40여戶의人家가 点在하고 있었다. 開港직후에는, 朝鮮인의 가옥은 日本人 거류만의 임시주거가 되기도 하고, 舊萬戶廳의 건물은 日本領事館의 假廳舍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금씩 바라크건물이 세워지지만, 宅地競貸가 이루어져 택지의 조성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바라크건물에서 行政業務나 營業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開港후의 外國人居留地의 형성과 관련된 행정 및 자치기관이나 시설등의 설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

- * 木浦海關의 사무개시(1897. 10. 1) …… 舊萬戶廳의 개청사
- * 日本大阪商船會社 出張所개설(1897. 10. 24) …… 大阪·仁川간의 汽船이 寄港
- * 日本領事館의 업무개시(1897. 10. 26) …… 동시에 영사관 경찰업무도 개시
- * 朝鮮 務安監理署의 업무개시(1897. 10. 말) …… 무안경찰서도 동시개설. 舊萬戶廳사용
- * 日本우편국의 업무개시(1897. 11. 15) …… 日本領事館내
- * 日本領事館을 바라크건물²³⁾로 임시이전(1897. 11. 18) …… 경찰서, 우편국도
- * 朝鮮 務安郵便司의 개청(1897. 12)
- * 公立病院의 개원(1897.) …… 漢城으로부터 日本人醫師 峰俊藏

20) 木浦府編, 「木浦府史」, 1930.12, 목포, 828쪽의 <표>을 참조.

- * 朝鮮 務安電報司의 개청(1898. 2) …… 전신의 개통
- * 日本領事館가청사의 낙성(1899. 2) …… 경찰서, 우편국도 입주
- * 日本居留民世話掛의 결성(1898. 2. 17) …… 동년9월1일 日本居留民會로 재조직
- * 各國居留地會(紳董公司)의 설립(1898. 4) …… 공용어는 日本어로 함
- * 日本 東本願寺 支院의 설립(1898. 4)
- * 大韓汽船會社 및 日本郵便船會社의 대리점의 개설(1898. 4)
- * 朝鮮政府와 日本公使사이에 間行里程區域의 조정(1898. 4)
- * 居留地경찰서의 개설(1898. 6) …… 日本영사관 경찰에 위임
- * 日本海上保險會社대리점의 개설(1898. 6) …… 같은 해 帝國海上, 明治火災, 明治生命의 대리점도 개설됨.
- * 日本第一銀行 출장소의 개설(1898. 10)
- * 日本人小學校의 개교(1898. 11. 16) …… 東本願寺
- * 수출상단체(商話會), 수입상단체(雜貨商組合), 소매상조합의 결성(1898. 가을)
- * 朝鮮 務安監理署, 신청사로 이전(1899. 6) …… 居留지의 인접지역인 雙橋里 위치
- * 朝鮮政府, 海壁工事에 착수(1899. 6) …… 1901. 4준공
- * 居留地신문 木浦新報의 발행(1899. 6. 16)
- * 木浦商工會議所의 설립(1899. 12. 31)
- * 日本領事館본청사준공(1900. 12) …… 경찰서, 우편국, 관사도 동시에 준공

21)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78號附屬, 木浦各國居留地海壁築造契約書」, 「木浦居留地海壁工事一件」, 1898.5. 11을 참조.

22) 木浦府編, 「前揭書」, 1930.12 및, 木浦誌編纂委員會編, 「前揭書」, 1914.2의 관련기사에서 발췌하여 작성했다.

23) 이 건물은 木浦開港 이후 최초의 바라크건물이며, 潘谷龍郎이란 商人이 仁川에서 배로 싣고 온 것을 목수인 濱田馬吉(木浦최초의 목수)가 조립한 것이다. 9m×4.5m의 苦蒼이며, 3칸으로 나누어 사용했다. 木浦誌編纂會編, 「前揭書」, 58쪽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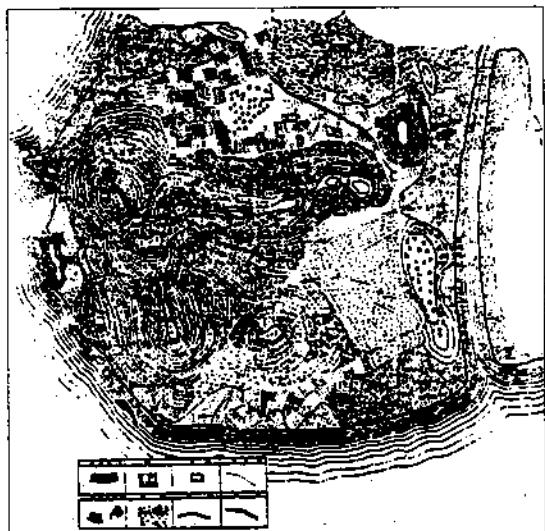


그림 1. 「內田報告書」 첨부의 木浦鎮地形圖 1
(1895.1)



그림 2. 「內田報告書」 첨부의 木浦鎮地形圖 2
(1895.1)

4. 地形과 面積

4.1 地形

『木浦鎮』은 韓半島의 남서부의 端部에 위치하고, 거기에는 榮山江의 最下류가 흐르며, 水運交易의 현관에 해당하는 위치이기도 하다. 그 위치조건은 「앞은 多島海에 둘러싸여 外海로 통하고, 뒤는 湖南平野의 수십만頃²⁴⁾의 미전옥답이 펼쳐져 있어, 바다에서 해산물이 무진장하고, 육지에는 농산물이 무한히 풍부한 것이며, 港口는 깊게 濱을 이루고 배후의 識達山이 북풍을 막아주며, 앞으로 '靈岩半島'를 바라보며 '高下島'는 그 항구옆에 위치하는, 朝鮮의 全沿岸중에서 드물게 보는 良港²⁵⁾이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居留地와 인접하여 朝鮮人 마을인 「雙橋里」가 있는데, 이 마을은 주변지역에서는 커다란 장시가 열리는 곳²⁶⁾이어서, 居留地의 상업적인 배후지역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市場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居留地안은 전체적으로 보아, 산지·논·간석지로 각각 3分되는 地形을 이루고 있다. 1895년 1월 5일 駐京城日本領事館의 一等領事 内田定権가 全羅道의 開港후보지였던 古阜灣(龍淵灣)과 木浦鎮을 방문하여, 開港場으로서의 조건을 위치·시가지조성의 방법 및 가능성면적·음료수의 공급여부·내륙지방과의 거리 및 교통관계·배후도시 등을 검토한 후, 지형도등을 첨부한 領事報告書²⁷⁾—편의상, 「內田報告書」라 부른다.—를 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古阜灣과 木浦鎮과의 비교에서 木浦鎮을 開港場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內田報告書」의 첨부도면 <그림 1>,<그림 2>,<그림 3>은 木浦鎮의 모습을 묘사하는 최초의 도면이므로, 여기에 소개해 두고자 한다.

24) '頃'이란 中國의 면적 단위로 써, 1頃=100畝, 1畝=100坪(中國), 30坪(日本)이다. 日本人의 기록이므로, 1畝=30坪, 약 1a(=100m²)로 생각하면, 1頃=100a=1ha가 된다.

25) 木浦誌編纂會編, 「前揭書」, 1쪽을 참조.

26) 係賴睦, 「前掲書」, 87쪽 및 92쪽을 참조.

27) 日本外務省記錄, 「古阜灣及木浦視察復命書」, 「京城領事館報告書」, 1895. 1.31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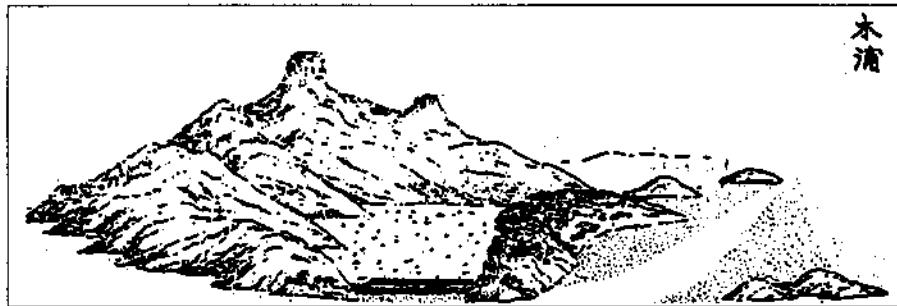


그림 3. 「内田報告書」첨부의 木浦鎮全景圖面 (1895.1)

또한, 内前報告書의 의견등에 의해 같은 해 말 경에 開港이 内定된 후, 1896년 10월 30일 開港준비를 위해 木浦를 방문하는 仁川海關長 오스본과同行하여, 8일간이나 同地를 관찰한 仁川日本領事館의 書記 前間恭作은 11월 11일부의 상세한 보고서-편의상, 「前間報告書」라 부른다--를 제출한다²⁸⁾. 이 「前間報告書」에서는, 開港場으로 결정하는 도중의 木浦鎮의 모습을 그린 지형도(<그림 4>)를 첨부하고, 地形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인용하여 地形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기로 한다.

「……(前略)西北部는 識達山의 산기슭에 해당하여 경사가 상당히 급하고, 더우기 그 산은 바위가 노출된 峽山이며, 암석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外皮의 5,6척의 토양이 덮혀 있을 뿐이라, 이 부분은 宅地로서는 거의 적합하지 않는다.

區劃내에서의 평지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의 <Ⓐ>의 논이고, 이 논은 원래 간석지에 높이 2,3間(3.6-5.4m: 저지주)의 계방을 쌓아 남쪽에서의 潮水의 침입을 막으려고 만든것으로, 어느 부분의 지반은 滿潮水面보다 5,6尺에서 1丈이나 낮다. 현재 <Ⓐ>의 간석지는 <Ⓑ>의 논보다 2,3尺이나 높아, 중간의 도로를 통행할 적에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곳(<Ⓐ>의 논을 말함: 저지주)에 시가지를 만들려면 평균 높이 1丈이상의 埋築을 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 하수구등의 배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低窪하여 위생상 불량한 시가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논을 말함: 저

자주)의 埋築도 현재의 간석지인 <Ⓐ>를 매립하는 것과 그 비용이 별반 차이없을 것이다.

<Ⓑ> 木浦鎮의 구릉은 남쪽부분에만 토양이 있고, 중앙이북은 완전히 암석이 노출되어 북쪽에서 보면 전체가 바위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현재의 民家도 凹凸이 심한 곳에 겨우 建造되어 있어서, 용이하게 택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남쪽부분을 海關敷地로 사용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 즉 岩山과 같은 부분은 居留地의 遊園地정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와 <Ⓓ>의 부분은 위와 같고, 쉽게 宅地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의 구릉과 <Ⓓ>의 구릉이다. <Ⓒ>는 서쪽에 있는 산줄기의 완만한 구배를 가지며 암석도 노출되지 않아, 용이하게 整地하여 宅地로 할 수 있기는 해도 사가지로서는 동산부분의 조금이어서, 손바닥만한 면적이되어 그다지 유망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의 구릉은 현재 松林으로 <Ⓒ>보다 더 언덕지고 험준하고, 이 구릉의 前面에 있는 海關用地의 표식이 있는 구역은 생각컨데 전부를 官舍用地로 사용할 계획임이 분명하다. 그 서쪽부분은 뒤면에 경사가 심한 산이 자리하기 때문에 넓이가 협소하여, 유망한 곳이라 할 수 없다.

<Ⓔ>지역, 즉 沙串이라 불리는 이 곳은 識達山 동편의 산줄기가 내려오지만, 街道동쪽부분은 경사가 매우 완만한 구릉모양의 지역으로 남쪽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언덕과 같다. 북쪽으로는 점차 경사가 지지만 거의 평지와 같으며, 현재는 밀농사를 짚고 있어서, 이 지역은 高低를 조정하면 居留地북쪽경계까지 용이하게 시가지를 만들 수 있다. 더우기, 장차 形성될 朝鮮人 家屋은 바로 북쪽에 접속될 것이므로, 이 지역은 가장 유망한 곳이다.

豫定居留地경제선안에서 현재 海面에 속하는 부분을 埋築하여 용이하게 장래의 양호한 지역이

28) 日本外務省記錄, 「公信第38號」, 「仁川領事館報告書」, 1896.11.17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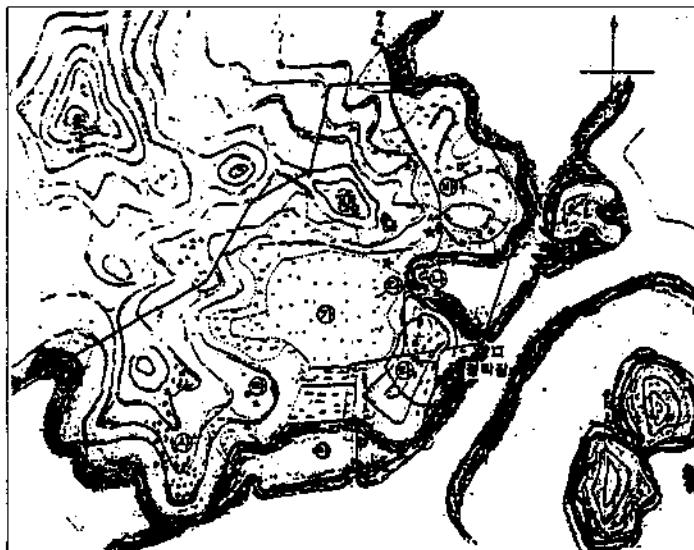


그림 4. 「前間報告書」첨부의 木浦居留地地形圖 (1896.11)

될 곳은 ①의 간석지이다. 이 간석지는 앞에서 말한대로 서면에 ②의 논보다도 지반이 높으므로 가장 먼저 埋築을 하여 市街地로 해야 할 것이다. ③의 지역은 ④의 埋築과 함께 매립해야 하는데, 앞의 간석지(①)간석지: 저지주)에 비하면 어려운 공사가 될 것이다(後略)……」

木浦鎮의 험한 지형에 대하여 상세하게 표현한 「前間報告書」는, 이 땅이 상당의 시기지로 변하려면 대단히 높은 건설비가 소요될 것임을 결론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 「前間報告書」에 의한 居留地境界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경계(<그림5> 開港 당시의 木浦鎮地形圖를 참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896년의 「前間報告書」에서의 경계는, 동쪽 끝의 「松島」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木浦鎮의前面海岸과 논앞쪽의 제방을 따라 경계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경계의식은 보다 명확한 것이 되고 있다. 또, 이 경계선대로라면, 대규모의 海壁工事²⁹⁾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결정된 경계은, 동쪽의 「松島」를 포함한 陸地부만으로 되어 있고, 海岸부의 경계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애매한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의 「前間報告書」의 경계는 당시의 現地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가능한 대규모의 공사를 하지 않고도 빠른 시일내에 定住할 수 있는 경계선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최종결정의 경계선은 보다 넓은 居留地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리한 해안의 해벽공사를 불가피한 것으로 하는 경계라는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매립공사를 하는 데는, 당시 埋立을 위한 흙이 부족하여 곤란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山地의 地區를 観貸한 거류민이 흙을 주는 것을 싫어해서, 居留地밖의 朝鮮人마을에서 埋立工事의 재료를 購買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일을 務安監理와 협의한다라는 領事報告³⁰⁾가 있을 정도였다.

결국,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地形은, 시가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朝鮮政府의 부담과 거류민의 부담으로 대규모의 매립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험한 자연지형을 스스로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다.

29) 海壁工事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後述하는 5項을 참조할 것.

30)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28號, 木浦居留地實測狀況」, 「韓國各開市場各國居留地地區公賣一件」, 1897.12.2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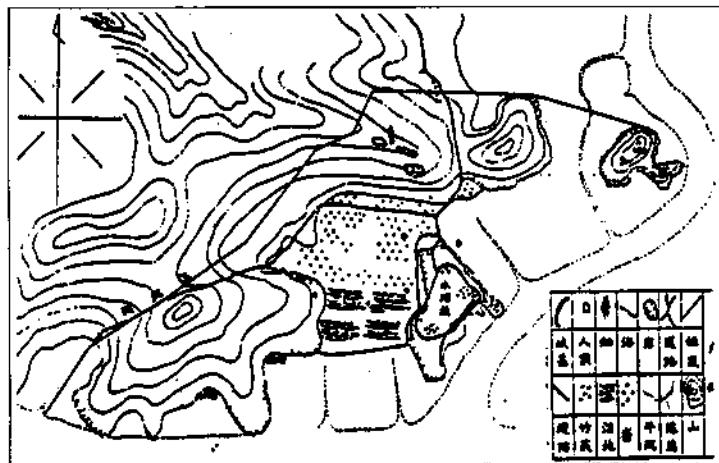


그림 5. 開港당시의 木浦居留地地形圖 (1897년)

4.2 面積과 宅地競貸

1897년 10월 16일 체결된 租界章程에서, 平地를 '甲'지구, 山地를 '乙'지구, 또 海岸의 간석지를 '丙'지구로 지정하고, 競貸宅地의 면적제한을 정하여 競貸를 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同年 12월이 지나도록 居留地내의 測量³¹⁾이 종료되지 않아, 日本領事館敷地앞의 '甲'지구의 宅地 78필지와 附屬의 10道路만이 끝난 정도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시점에서 이미 競貸의 신청자가 '甲'지구에 2명, 또 朝鮮人마을로 통하는 「務安街道」에 면한 地區에 數名이 있는데, 訴明자는日本人뿐이며, 이듬해의 3,4월이 되면 仁川의 미국인, 독

일인이 訴明해 올 것이다」라는 日本領事의 보고³²⁾가 있다. 따라서, 開港직후의 2개월간은 宅地競貸의 준비기간인 동시에, 日本人居留民의 이주를 탐색하는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898년 1월 5일, 제1회 宅地競貸가 甲지구의 宅地 6筆地에서 행해진다³³⁾. 이후, 居留地안의 택지의 측량이 진전되면서, 同年 4월 13일(71筆地), 5월 25일(15筆地), 6월 28일(150筆地)의 4회에 걸쳐 각각 宅地競貸가 이루어지니, 日本國內에 公示하라, 는 駐木浦領事의 보고가 있다³⁴⁾. 이 이후에도 필

31) 그 測量을 담당한 것은, 木浦海關의 技師인 스테든(Staden, 네덜란드인)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그의 宅地測量作業은 同年 11월 13일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왜냐하면, 木浦誌編纂會編, 「前揭書」, 32-33쪽에서는, 「스테든씨라는 청년기사에 의하여 11월 13일 이후 점차로 진행되어.」라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외에도 初代木浦海關長인 아무어(W. Armour, 영국인)도 관계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측량기사이기기 한 아무어는 1896년 10월 30일 仁川稅關長의 木浦開港준비를 위한 방문때에, 측량을 위해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日本外務省記錄, 「公信第38號」, 「仁川領事館報告書」, 1896.11.17을 참조.

32)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28號, 木浦居留地實測狀況」, 「韓國各開市場各國居留地地區公賣一件」, 1897.12.2 참조.

33) 제1회 宅地競貸는 1월 5일 이루어지나, 務安監理署 측의 行政착오(電信의 고장)으로, 2월 19일에 동일의 경락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競貸가 이루어 진다. 그 경락자와 경락자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제 1호지 (679m²) ; 萩野称一(大阪府)
제 2호지 (679m²) ; 太田吉太郎(長崎縣)
제 3호지 (679m²) ; 太田吉太郎 (長崎縣)
제 13호지 (679m²) ; 福田有造(長崎縣)
제 14호지 (679m²) ; 太田吉太郎(長崎縣)
제 15호지 (679m²) ; 太田吉太郎 (長崎縣)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4號 및 本省第22號」, 「韓國各開市場各國居留地地區公賣一件」, 1898.1.6 및 2.21을 참조.

표 5. 4회의 宅地競貸의 公示에 의한 面積集計(단위:m²)

回	地區	筆	面積	平均	回	地區	筆	面積	平均
1	甲	6	4,074	679.00	3	丙	11	8,761	796.45
2	甲	29	22,508	776.14		소계	15	22,981	-
	乙	13	47,769	3474.46	4	甲	98	70,523	719.62
	丙	29	23,572	812.83		乙	15	49,975	3331.67
	소계	71	93,841	-		丙	38	33,899	892.08
3	甲	1	945	945.00		소계	150	154,397	-
	乙	3	13,275	4425.00		총 계	242	275,293	-

각 地區의 면적합계 : 甲98,050m², 乙111,019m², 丙66,232m²

경 宅地競貸는 이루어 졌을 것이다, 그에 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위의 4회에 걸친 宅地競貸의公示에 나타난 地區別 면적을 집계하면, <표 5>와 같다.

宅地競貸에서의 競落額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1898년4월13일 행해진 제2회째의 宅地競貸의 71필지의 총 경락액은 21,850엔이라는 기록이 있다³⁵⁾. 이 71필지(93,841m²=28,416평)의 총 경락액 중에, 택지원가인 7,924엔³⁶⁾은 朝鮮政府의 수입이 되지만, 그 차액인 13,926엔은 各國居留地會(紳董公司)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이 차액은 택지원가의 1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仁川의 日本專管居留地의 87.8%³⁷⁾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高額의 경락액을 나타내는 것이다³⁸⁾. 이것은, 朝鮮政府의 수입이 되어, 거류지개발의 자금이 될 宅地原價의 산정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朝鮮政府의 거류지개발을 위한 자금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木浦居留地에서의 宅地競貸는 日本人의 독무대가 되어, 木浦居留地는 마치 日本專管居留地와 같이 되어 갔던 것이다. 실제의 세력으로 日本居留民이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

회의 宅地競貸에서 2명의 清國人이 競落되었을 때는, 清國은 非條約國임으로 租界章程 제11조를

34)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4,22號外,64,95號」, 「韓國各開市場各國居留地地區公賣一件」, 1898.1.6, 2.21, 3.6, 4.19, 5.26을 각각 참조.

35)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63號」, 「韓國各開市場各國居留地地區公賣一件」, 1898.4.14을 참조.

36) 甲지구 6불, 乙 3불, 丙 5불로 계산하면, 총원가는 3,962불이 되는데, 당시의 외환시세인 1엔=50센트로 환산하면, 7,924엔이 된다. 당시의 외환시세는, 漢潭健三外, 「世界の通貨」, 日本稅關協會, 1979.3.30, 동경, 230-232쪽 참조.

37) 仁川의 총 경락액은 757,350文이며, 택지원가는 403,250文인데, 그 차액은 354,100文이 된다. 따라서, 차액, 즉 居留地會의 수입은 택지원가의 87.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摘著, 「韓國近代の都市史研究」, 「東京大學工學博士學位論文」, 1993.12.21, 48쪽을 참조.

38) 실제로도, 日本政府는 仁川居留地에서의 쓰라린 경영-- 日本專管居留地의 혐소와 各國共同居留地에서의 소수의 歐美人에 의한 택지의 독점으로, 불편불리한 상황 --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木浦居留地에서는 택지를 買占함으로써當地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木浦領事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 漢城, 釜山, 仁川등지에서 자금이 풍부한 자본 배후에 두어 宅地競貸 회망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거나, 日本國內에도 木浦에서의 宅地競貸의 건을 공보하도록 外務省에 신청하기도 하였다. 木浦誌編纂會編, 「前揭書」, 32-36쪽 및, 宅地競貸公示을 위한 4회의 領事報告를 참조.

표 6. 國家別 宅地競貸狀況 (1899년현재)

借主國	借主	地區	面積	用途	借主國	地區	面積
日本	상인	甲	48,286	領事館敷地	日本	乙	#2) 47,968
	상인	乙	271,519		英國	乙	12,475
	상인	丙	64,280		러시아	乙	19,311
淸國	상인	甲	3,217	居留地會用		乙	14,470
	상인	丙	2,599	公園用地		乙	13,000
러시아	#1)	乙	10,360	海關用地		乙,丙	약 80,000
	상인	乙	10,345	合計			597,830

<출전>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115號, 1899.7.8」, 「韓國開市場各國居留地內公賣一件」에서 인용 및 재편집.

#1) : 在漢城러시아公使官事務官 슈타인의 名義(木浦號, 295쪽 참조)

#2) : 이 47,968㎡는 各國公使간의 합의에 의한 31,351㎡보다 많은 면적인데 이것은 公使間 합의이후 日本側이 주변의 競貸敷地를 매입하여 합계한 면적임⁴¹⁾.

※ 前記의 <표 5>의 宅地競貸를 公示한 내용과 비교하면 특히 甲지구의 면적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들어 항의중이다, 라는 記錄³⁹⁾이 있다. 또, 神戶居留의 프랑스인(洋酒商)이 競貸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거의日本人만의 분위기와 高價의 경락액에 놀려, 일찌기 神戶로 돌아갔다라고도 한다. 이러한 일은, 木浦各國共同居留地에서의 日本居留民의 세력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통계와 같이 나타난다. 즉, 1899년7월8일부의 木浦日本領事館의 報告⁴⁰⁾를 보면, 宅地競貸의 결과를 賽落者의 國籍別로 그 面積에 대하여,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택지가 日本人所有로 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같은 보고서에는 완성된 宅地區劃의 지도(<그림 6>)가 첨부되어 있는데, 居留地北東部의 조그만 埋立부분은 區劃測量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으로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시가지의 概觀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 居留地施設의 建設 : 海壁工事

木浦各國共同居留地는, 간식지와 논이 많은 지역이지만, 開港前부터 이미 논과 간식지사이에는 堤防이 설치되어 있어서⁴¹⁾, 적어도 논지역의 매립공사는 금방이라도 가능한 상태였음은, 이미 앞에서 指摘한 바있다. 또한, 「木浦鎮南浦各國租界章程」의 제1조에서도 「해벽및 부두는 해당港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필요한 장소에 朝鮮政府가 그것을 건설하고(후략)……」 라 정하여,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海壁은 필요할 때 건설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드시라는 필수조건은 아니었다. 더욱기, 그 필요성의 판단이나 건설실행은 어디까지나 朝鮮政府에 따를것을 明示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木浦各國共同居留地에서는, 「各國居留地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日本

39)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58號」, 「韓國各開市場各國居留地地區公賣一件」, 1898.4.14을 참조. 그런데, 清國은 木浦租界章程에 직접 조인은 하지 않았으나, 英國의 總領事が 在韓淸國民保護員을 겸임하여 조인하였기 때문에, 결국 清國人の 宅地競貸에의 참가는 가능한 것이었다.

40)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115號」, 「韓國各開市場各國居留地地區公賣一件」, 1899.7.8을 참조.

41) 堤防의 설치는, 「內田報告書」나 「前間報告書」와 같이 日本측의 여러 차례의 현지조사에 의하여 확인이 끝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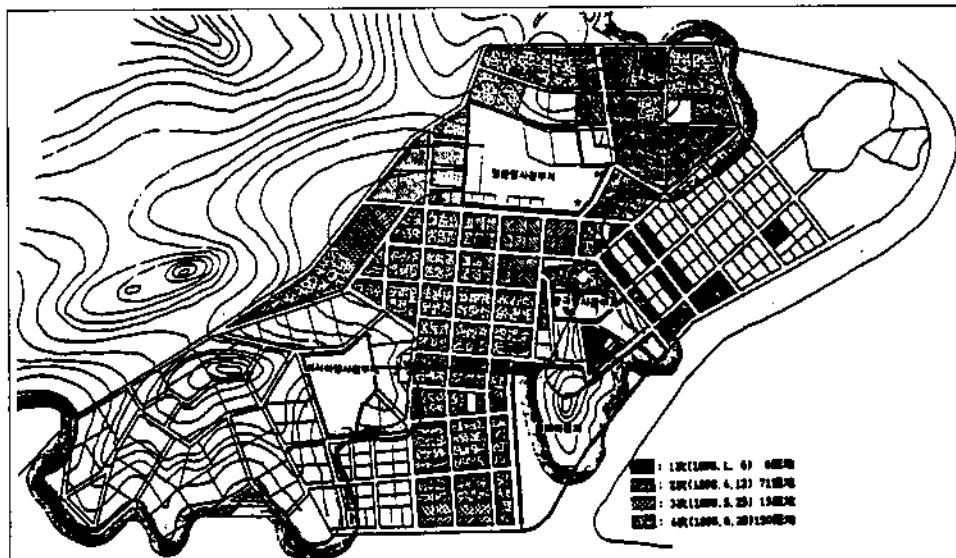


그림 6. 木浦居留地 宅地競賃의 結果報告圖面 (1899.7)

居留地와 마찬가지로, 商權이 완전히 우리에게 있으므로, 海壁工事의 遲速은 무엇보다 帝國商業의 이해관계에 걸리니⁴²⁾」, 日本측에 의한 해안의 海壁工事의 주장은 朝鮮國木浦監理를 재촉하여, 海壁의 건설에까지 이르게 한다. 駐木浦日本領事에게 해벽건설을 재촉받은 木浦監理가 朝鮮政府의 外部大臣에게 上申한 결과, 그 건설및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지시받는데, 이에 대하여 木浦監理는 海壁의 설계와 예산등 건설계획안의立案을 駐木浦日本領事에게 의뢰한다⁴³⁾. 이에 의하여, 해벽건설공사는 日本측의 主導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5.1 海壁工事의 設計 및豫算

木浦監理로부터 설계및 예산안작성을 의뢰받은 日本領事의 요청에 따라, 駐漢城日本公使館의 技手 武野政太가 해벽의 건설계획을 맡게 된다. 해벽의 설계와 견적의 결과, 당초 제안되었던 木柵構造로는 약 5만圓이 되나, 영구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그 영선보수가 每年 필요하게 되므로, 3,4 만圓을 추가하여 石造로 할 것을 권한다, 라는 방침을 정한다. 그러나, 당시의 朝鮮政府로서는, 居留지의 해벽공사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財政的인 여유가 없는 사정이어서, 日本의 第一銀行으로부터 工事費인 8만圓을 貸付하도록 준비하게 한다.

그런데, 第一銀行으로부터의 貸付條件의 하나⁴⁴⁾로, 木浦海關의 收入을 貸付에 대한 擔保로 할 것을 제시하나, 당시 朝鮮政府의 總稅務司겸 財政顧問인 브라운(J. Mcleavy Brown, 영국인)이 반대하여, 1898년 11월7일 朝鮮政府의 예산에서 9만5 천圓을 지출할 것⁴⁵⁾을 다시 제안한다. 이와 함께 협의되고 약정된 내용은, 1. 木浦해벽은 朝鮮政府가 축조할 것. 2. 공사비용의 책정및 지출의 방법은 海關에서 적당한 技師를 파견하여 조사보고가 있은 후에 빠른 시일내에 결정할 것. 3. 派遣技師는 오는 25일경 渡韓예정으로 도착즉시 木浦로 출장시킬 것. 4. 공사시행의 방법은 대체로 別

42) 駐木浦領事久水三郎의 外務次官小林壽泰郎앞의 公文書에서 인용,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134號」, 「木浦居留地海壁工事一件」, 1898.7.18의 駐木浦領事久水三郎의 外務次官小林壽太郎앞으로의 공문서를 참조.

43)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134號」, 「木浦居留地海壁工事一件」, 1898.7.18의 駐木浦領事久水三郎의 外務次官小林壽太郎앞으로의 공문서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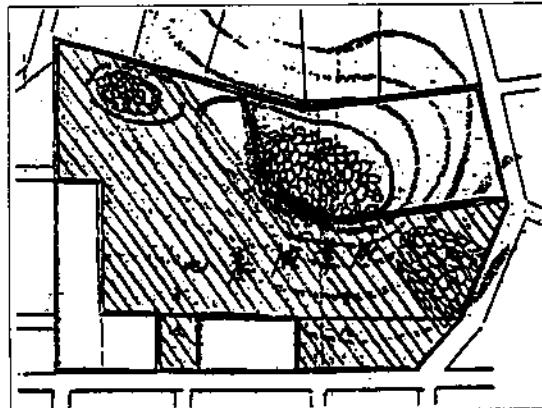


그림 7. 駐木浦日本領事館敷地의 도면

紙의 約案에 준할 것. 의 4가지였다. 여기에서의 공사시행의 기본이 되는 別紙約案이란, 브라운이 제안한 「Proposed Agreement regarding the Mokpo Seawall」이다. 물론, 이 브라운의 제안도 처음 木浦監理의 의뢰를 받은 日本측의 설계와 견적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 되고 있는데, 이를 내용에 대하여 上海로부터 1898년 12월 8일⁴⁶⁾ 木浦에 도착한 土木技師 하딩(G. R. Harding, 영국인)⁴⁷⁾이 동의한 후, 본격적인 공사의 착수준비에 들어가, 이듬해

44) 그 貸付條件은 다음과 같다.

1. 대출금의 금액은 金8만圓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金2만圓을 대부하고 잔액은 다음달부터 매월 초에 金1만圓을 대부한다.
 2. 대출금의 이자는 년 1할5부로 하고, ??계산으로 매월초에 朝鮮政府가 第一銀行에 지불할 것.
 3. 대출금의 변제방법은 당초의 대출이 이루어진 다음 달부터 매월말에 金2500圓을 朝鮮政府가 第一銀行에 불입할 것.
 4. 대출금의 담보는 朝鮮政府로부터 木浦의 關稅를 第一銀行에 제공하고, 그 증서는 明治27년(1894년)의 거래의 예에 따라 日本公使館의 증명을 받을 것.
 5. 海壁築造工事의 설계및 청부의 수속경비의 산정 등은 상세하게 조사하여 朝鮮政府에서 第一銀行에 보고할 것.
- 日本外務省記錄, 「機密送第11號의 別紙」, 「木浦居留地海壁工事一件」, 1898.8.24에서 인용. 이 내용을 보면, 日本측의 대단히 오만한 태도를 알 수 있다.

3월 8일 해벽공사의 約定書가 朝鮮國 外部交涉局長과 木浦居留地會長(駐木浦日本領事 久水三郎)과의 사이에 조인되게 된다. 이 約定書⁴⁸⁾는, 주로

- 45) 日本外務省記錄, 「發第83號, 木浦海壁築造ノ件」, 「木浦居留地海壁工事一件」, 1898.12.10의 別紙甲號의 甲號附屬인 「Proposed Agreement regarding the Mokpo Seawall」을 참조. 이 「發第83號」의 공문서는, 主漢城臨時代理公使日置益이 日本外務大臣 앞으로 보낸 것이며, 그 첨부의 別紙甲號는 朝鮮政府의 브라운總稅務司와 日置代理公使와의 협의사항을 木浦領事에게 알린 1898년 11월 22일의 문서이다. 또 甲號附屬은 그 別紙甲號에 첨부된 브라운總稅務司의 約定案의 사본인데, 그 約定案을 日本측에 제시한 것은同年 11월 7일에 협의와 함께 이루어 진 것이다. 그러나, 이 브라운제안의 95,000圓의 금액에 대하여, 그것을 정하기 전에 신용할 수 있는 技師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견해를 나타내어, 합의를 보지 못한다.
- 46) 日本外務省記錄, 「發第83號, 木浦海壁築造ノ件」, 「前掲書」, 1898.12.10을 참조. 「그저께 別紙乙號案의 技師도 當地에 도착하고, 오늘 總稅務司도 本官을 내방하여서, 木浦居留地會技師를 입회시켜 설계사양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의를 거친 결과 새로 온 技師의 의견도 대체로 原設計에 동의를 표하여…」라 기록하고 있다.
- 47) 하딩은 1898년 12월 6,7일 경에 渡韓한것으로 생각되는 데, 그는 清國總稅務司로 버트 하트의 밑에 있던 土木學士의 技師이다(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78號」, 「前掲書」, 1899.5.11을 참조). 그는 브라운의 요청으로 渡韓하여, 朝鮮王室의 궁궐인 慶運宮(德壽宮)안의 石造殿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지만(日本建築學會編, 「建築雜誌」, 第228號, 동경, 1910.12을 참조), 土木學士에 의한 建築設計라는 점에서의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이 이상의 하딩에 관한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 48) 日本外務省記錄, 「發第22號, 木浦海壁一件落着ノ報告」, 「前掲書」, 1899.3.31의 別紙사본을 참조. 約定書에서 해벽의 규모를 보면, 해벽의 전길이는 1,967m로, 공사비는 94,568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南 Section : 427m ; 21,756圓 (1m'당 50원95전)
海側 Section 1: 224m; 11,388圓 (50원84전)

공사의 규모와 비용에 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앞에서 지적한 브라운제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前記의 브라운제안의 내용도, 木浦監理의 의뢰를 받은 日本측의 설계와 견적을 바탕으로 한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日本측의 의도대로 움직여 왔음을 알 수 있다.

5.2 工事請負人の 選定과 契約

工事約定書의 조인에 따라, 朝鮮政府로부터 공사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木浦居留地會에서는 請負業者 木谷伊助를 선정하고, 1899년 5월 4일 日本外務省通商局長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선정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이, 志願者중 大阪府 平民 木谷伊助가 가장 적당하다고 정했다⁴⁹⁾,라고 한다. 日本居留民會의 추천에 의한 청부인의 선정과 함께, 공사의 說明願이 日本居留民會會長代理로부터 在木浦久水三郎領事에게 제출되고, 또 동시에, 같은 날 駐木浦 日本領事의 설명도 끝난다⁵⁰⁾. 이 추천과 선정, 공사설명원 및 설명종료라는 일련의 일이, 서류상으로는 같은 날인 4월 20일에 이루어 지고 있다. 이것은, 日本측에 의한 청부업자의 선정이나 공사내용의 확정등, 해벽공사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공사계약만이 남아 있는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드디어, 1899년 4월 25일 정식의 海壁工事設計圖가 첨부된 「木浦各國居留地海壁築造設計書」가 작성되어, 같은 날 이미 선정되어 있던 청부업자와 木浦各國居留地會會頭와의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다⁵¹⁾. 이 때의 설계서와 계약서에의 서명 날인자는 각각 동일인물인데, 다음과 같다.

木浦各國居留地會會頭 日本 一等領事 久水三郎

請負人 大阪市 木谷伊助⁵²⁾

同 代理人 廣島縣 당시 木浦居留地3번지 高木萬壽
太

保證人 大阪市 庄野嘉久藏⁵³⁾

海關 Section 2:220m;14,400圓 (〃 65원45전)
東 Section :680m;34,625圓 (〃 50원92전)
北 Section :416m;12,368圓 (〃 29원81전)

同 代理人 大阪市 당시 仁川日本專管居留地 57호
萬玉惣太郎
同 長崎縣 당시 木浦居留地外 鎌谷龍郎

이것을 볼 때, 공사의 발주자, 請負人 및 그 保證人, 또 그들의 代理人까지 공사관계자전원이 日本人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木浦各國居留地會측의 공사감독도, 처음의 설계자인 技手 武野政太와 技手 大澤輝雄에 맡겨져 있었던 것이다⁵⁴⁾. 즉, 해벽공사에 관계되는 모든 인원이 日本人이었다는 것이다.

또, 계약상으로는 1899년 5월 1일 起工하여, 1900년 11월 30일까지 竣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공사의 내용은, 설계서와 계약서에 자세히 나타나 있

49)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68號, 木浦居留地海壁建築工事請負人」, 「前掲書」, 1899.5.4을 참조, 그러나, 처음부터 본 공사의 청부인으로 日本人을 선정하고자 하는 방침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同記錄, 「本省第78號」, 「前掲書」, 1899.5.11에서 알 수 있다. 同文書에는 「 무엇보다 公平을 취지로 하여 木浦居留民中 거의 전부를 점하는 日本居留民가운데서 상당하는 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日本居留地會의 추천을 받아, 大阪府平民 木谷伊助를 공사청부인으로 하여…」 라 쓰여 있다. 또, 同문서의 附屬으로 同年4월 20일부의 日本居留民會會長代理의 木浦居留民會會頭 久水三郎앞으로 海壁工事請負人推薦書가 첨부되어 있다.

50)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78號」, 「前掲書」, 1899.5.11의 附屬을 참조.

51)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78號」, 「前掲書」, 1899.5.11의 附屬 「木浦各國居留地海壁築造設計書」 및 「木浦各國居留地海壁築造契約書」를 참조.

52) 大阪木谷商店主로서, 仁川居留地에 支店을 두고, 木浦에는 出張店을 둔다. 木浦誌編纂會編, 「前掲書」, 278쪽을 참조.

53) 大阪庄野商店主로서, 仁川居留地에 支店을 설치해 있었다. 木浦誌編纂會, 「前掲書」, 278쪽을 참조.

54)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169號」, 「前掲書」, 1899.10.24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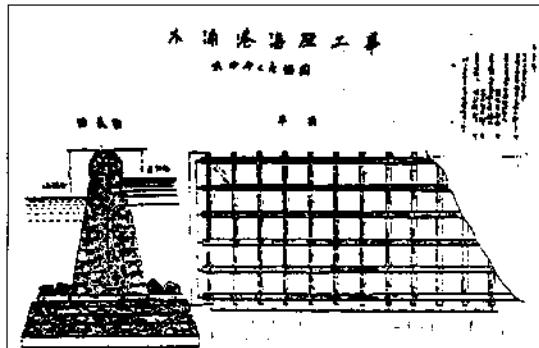


그림 8. 海壁本工事部의 海壁 平·단면도

다. 이를 설계서와 계약서는 토목공사이기는 하나, 당시의 건설공사의 상황을 말해 주는 드문 자료이다. 그 설계도면 3매(<그림 8>,<그림 9>,<그림 10>)를 여기에 소개한다.

5.3 海壁工事의 進行 및 竣工

1899년 6월 11일 起工式을 올리고, 해벽공사를 시작한 請負人 木谷伊助는, 木浦出張所主任 高木萬壽太를 대리인으로 하여, 仁川支店主任과 大阪의 本店支配人을 교대로 시찰시키고, 또 技師長으로는 工學土 達村容吉⁵⁵⁾을, 技手 内田錄雄을主任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시킨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중이던 같은 해 9월 30일 木浦鎮의 前面海岸의 海壁 약 50間(약 90미터)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난다. 이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당시의 木浦日本領事의 보고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전략) 이번 붕괴된 부분은 당초 築造할 당시 請負人技師로부터 해벽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보다 2,3間 안쪽으로 들여 놓을 것이 주장되었으나, 監督技手가 이를 거부하고 원위치에 세울 것을 강하게 지시한 사정이 있

55) '工學士'란,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석사나 박사가 없던 당시로는 최고의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였다. 이 達村은, 처음 한차례 공사현장에 나타나나, 이후 木浦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木浦誌編纂會編, 「前揭書」, 278쪽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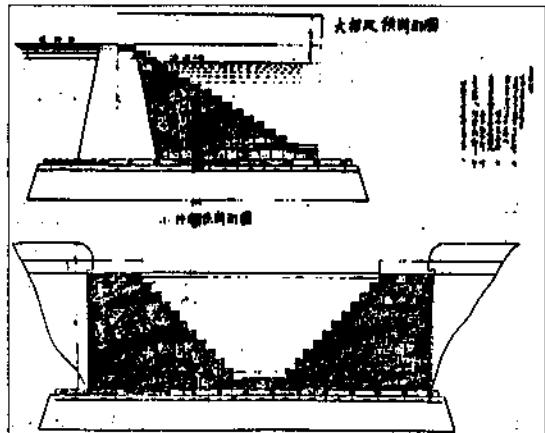


그림 9. 海壁本工事部의 大,小階段단면도

다. 이번 해벽의 일부 붕괴이전부터 請負人이 공사의 대부분의 설계에서 대단한 危懼心을 가져 왔던 바, 현재의 설계로는 도저히 해벽의 안전을 기하기 어려운 취지를 논하고, 설계의 부분적인 변경의 필요를 강하게 주장해 오고 (후략)... 56)」

즉, 이전부터 붕괴의 위험을 호소하며 설계의 수정을 주장하는 請負人측의 요구가 있었음과,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監督技手가 거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붕괴사고후에도 설계및 공사감독인 武野技手는 청부인측의 주장을 계속 거부한다. 그러나, 잡음이 끊이지 않자, 各國居留地會측은 해결을 위하여 日本에서 工學士 長崎武英技師를 초빙하게 되고, 그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국 축조의 위치를 변경하기로 한다. 또, 설계자이며 監督技手인 武野政太는 技手 大澤輝雄과 함께 辭職당함으로써, 붕괴사고의 처리는 일단락되게 된다.

그 후, 1901년 5월 29일에 일단 준공되지만, 같은 해 6월 1일에 그전의 붕괴사고후에 복구했던 부분이 다시 균열되기 시작하여, 붕괴되는 사고가 다

56)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169號, 技師招聘ノ件」, 「前揭書」, 1899.11.24에서 인용. 이 공문서는, 駐木浦日本領事森川季四郎의 日本外務省通商局長앞으로의 문서인데, 工事의 개시까지의 업무를 담당했던 久水三郎領事의 후임인 森川領事의 보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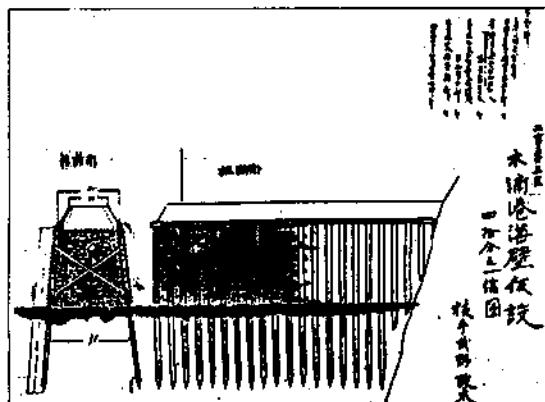


그림 10. 海壁假設工事部의 海壁단면도

시 일어 난다⁵⁷⁾. 그러나, 이 두번째의 붕괴사고에 대한 대책은 별반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두다가, 1909년5월에 세번째의 보수공사를 끝내고 있다⁵⁸⁾. 이 보수공사의 7,8천圓의 비용은 各國居留地會의 부담으로 하게 되어, 한때 各國居留地會의 재정이 입박당하여, 居留地債券 3만圓을 발행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해안해벽공사는, 붕괴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형식적으로는 1901년9월5일 준공한 것⁵⁹⁾으로 되어 있다.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해벽공사는, 居留地의 면적을 넓히려고, 또 한시라고 빨리 自國의 居留民을 정주시키려는 日本政府측의 무리한 독촉파, 설계등을 점검해야 할 책임을 가진 朝鮮政府의 무관심과 무능이, 처음의 설계에서부터 오류가 생기고, 급가야는 수차례의 붕괴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日本政府측은, 木浦居留地에서는 仁川居留地에서와 같이 他國人에게 居留地의 택지를 건네지 않을 방침으로, 해벽을 빨리 완성하여 가능한 많은 自國居留民을 정주시킴으로써 他國人的 이주를 저지하려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제방이 있기 때문에 논의

57) 日本外務省記錄, 「杉村通商局長宛必親展」, 「前掲書」, 1901.6.4을 참조, 이 문서는 공문서가 아니라, 駐木浦領事杉川季四郎이 日本外務省通商局長앞으로 보낸 私信이다. 木浦海壁의 재봉파사고에 대하여, 그 사고자체를 은밀하게 다투고자, 그 재공사의 비용을 어떻게든 충당하고자 부탁하는 親展書이다.

埋立은 당장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보다 넓은 宅地를 구하여 해벽의 건설을 채촉했던 일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반면, 朝鮮政府측은, 自力으로 해벽공사를 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總稅務司 브라운은 上海의 專門技師까지 초빙하여 설계를 점검시키지만, 그 결과는 전혀 엉뚱한 것이 되고 있다. 그 이후, 朝鮮政府측이 공사의 확인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해벽공사는 행정의 철저하지 못한 운용으로 불유쾌한 결과로 끝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開港場居留地가 갖는 모순의 한 예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6. 街區의 構成

街區의 구성상으로 木浦居留地는, 험한 자연지형에 맞추어 조성된 시가지를 하고 있다. 즉, 구릉지, 평지, 간석지가 각각 3分하는 지형이어서, 구릉지의 街區는 경사를 고려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편, 埋立을 전제로 한 간석지와 평지(평지라고 해도, 논인 지역)은 또한 동일한 街區형태를 하고 있다. 구릉지가 많은 부분은 各國領事館의 敷地가 차지하고 있어서, 그 지역은 街區計劃에서 제외되고 있다. 구릉지를 제외한 平地부는, 舊木浦鎮의 구릉을 중심으로 서쪽은 논이, 동쪽은 매립지가 대부분이지만, 양쪽 모두 海岸線-결국은 나중에 만들어진 海壁이지만--을 따라 街區分割의 한 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軸에 直交하여 해안선과 日本領事館이 있는 구릉지를 연결하도록, 또 하나의 軸이 있다. 그러나, 동서지역의 해안선이 舊木浦鎮의 구릉을 경계로 하여 각도가 변하므로, 두개의 軸은 東과 西의 지역에서 다른 방향을 갖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日本領事館敷地가 위치하는 배후의 구릉을 중심으로 부채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58) 木浦誌編纂會編, 「前揭畫」, 282쪽을 참조.

59) 日本外務省記錄, 「電受第267號」, 「前揭書」,
1901.9.9의 木浦領事의 보고를 참조.

이들의 街區의 形태를 이루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개항이전인 木浦鎮시대의 道路라고 생각한다. 開港前의 地形圖인 <그림 1>, <그림 4>, <그림 5>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대로, 朝鮮人마을「雙橋里」와 木浦鎮이나 船着場, 「溫錦洞」등을 잇는 도로가 있는데, 이들 기존의 도로가 시가지의 街區分割에서도 그대로 남아, 시가지계획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당시로는 그 도로만이 통행가능한 것으로, 그 이외는 논과 간석자이기 때문에 금방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거기에도 居留地의 조속한 宅地競貸를 재촉하는 日本政府 측의 강력한 요구까지 있어서⁶⁰⁾, 日本의 居留地에서처럼 시가지조성을 끝내고 나서 宅地競貸를 행하는 상황⁶¹⁾이 아니었음도 원인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의 居留地와 같이, 시가지의 조성을 끝내고 居留地에의 이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가지계획만을 마친 상태에서 거류민의 이주와 시가지조성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행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의 도로인 船着場 및 「溫錦洞」에서 木浦鎮의 西門을 지나 우물로 모여지고, 다시 그 우물과 「雙橋里」를 잇는 「務安街道」가 木浦居留地에서의 시가지의 기본도로가 되어 시가지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제1회宅地競貸의 對象街區가 우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생각해도, 4개의 기존 도로가 모이는 곳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런 일이 아니겠는가.

木浦居留地의 구릉지를 나타내는 乙지구를 제외한 街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街區를 6筆地의 數地로 분할된 街區(편의상, <6分割街區>라 부른다)와 8筆地로 분할된 街區(편의상, <8分割街區>라 부른다)가 있어서, 는인 서쪽지역은 <6分割街區>, 매립지인 동쪽지역은 <8分割街區>로 되어

60) 이 독촉은, '시간이 흐르면 他國의 競貸希望者가 모여들어, 宅地競貸에서 日本人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라는 예측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日本外務省記錄, 「本省第28號, 木浦居留地實測狀況」, 「韓國各開市場各國居留地地區公賣一件」, 1897.12.2을 참조.

있다. 그리고, 각 街區의 부지분할을 보면, 東西의 軸이 主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南北 방향으로正面을 두게 하고, 街區는 東西 방향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그 東西軸은 해안에 평행하는 것이며, 居留地内部에서 終結되는 軸이기도 하다. 즉, 東西軸의 兩端에 있는 동쪽의 바다와 서쪽의 산을 향하고 있어서, 居留地外部로의 확장성이 없는 内部終結的인 街區形態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街區의 형태, 즉 한 街區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점에 의문이 일 것이다.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街區의 구성이 자연지형이나 기존의 도로와 관계되는 <1次的要因>과, 그 1次的要因에 의하여 만들어진 <副次的要因>에 의한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각 街區는, 居留地章程에서 정해진 宅地의 제한면적 500~1000m²의 택지를 6筆地 또는 8筆地를 모아 한 街區의 크기를 만들기 위하여, 두 가지의 要因에 따라 결정되어진 街路사이를 2等分 또는 3等分하는 街區分割을 하고 있다, 라는 추정이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에 대하여, 다음의 <그림 11>에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⁶²⁾. 그리고, 각 街區의 사이에는 대부분 폭 10미터의 도로가 있고, 務安街道는 폭 12미터, 구릉지나 居留地외곽의 순환도로는 폭 8미터의 도로로 되어 있다.

<그림 11>의 「1次的要因」과 「副次的要因」에 의하여 결정되어진 틀사이의 街區를 2等分 또는 3等分하면서, 각 街區의 규모를 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61) 日本의 居留地 상황에 대하여는, 伊藤三千雄, 「外國人居留地域とその建築に關する研究」, 「東京大學大學院博士請求論文」, 1975.19, 東京을 참조.

62) 이하의 도면과 설명 가운데서의 치수와 면적들은, 4회의 宅地競貸公示의 領事報告의 내용, 1913년 측량의 지적도의 치수, 최근의 항측도(측적: 1/1200)의 치수에서 인용 또는 계산하여 산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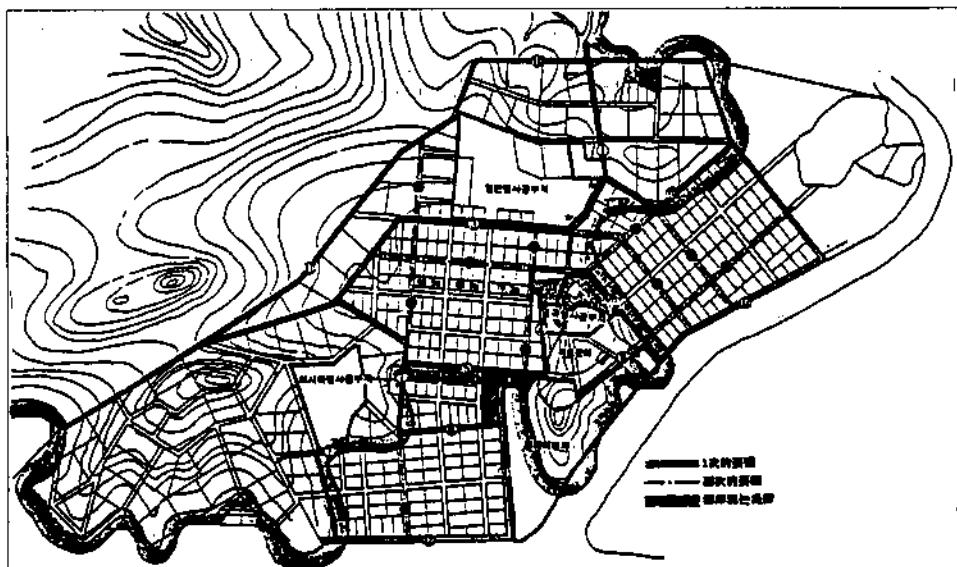


그림 11. 木浦居留地의 街區構成의 分석도

< 1次的 要因 >

★ : 우물

① : 기존의 務安街道

② : 先着場 - 우물의 기존도로이며, 동쪽의 간석지와의 경계도 된다.

③ : 우물 - 溫錦洞의 기존도로

④ : 우물 - 木浦鎮의 西門, 木浦鎮구릉의 기슭을 들고 있다.

⑤ : 이전 논사이의 堤防

⑥ : 이전 논과 간석지의 堤防

⑦ : 구릉의 기슭

⑧ : 木浦鎮 남쪽기슭의 기존도로

⑨ : 開港時부터 정해져 있던 海關數地의 경계선

⑩ : 동쪽간석지의 경계선

⑪ : 陸地部의 경계선

⑫ : 海岸의 海壁

< 副次的 要因 >

● ● ● : ④와 木浦鎮구릉의 기슭의 분절점의 연장선에 있으며, 각각 그 방향을 달리 하고 있다.

● : ⑦의 연장직선

● : ③의 연장직선

● : ⑩의 연장직선

● : ⑩의 分節點에서 해안으로의 연장선이며, ②와 평행하고 있다.

● : ⑧의 연장선

● : ⑤의 한쪽 끝에서 해안으로의 연장선이며, ②와 평행하고 있다.

또한, 木浦居留地의 이러한 자연조건에 의한 街區의 구성에 대하여, 그 성질을 나타내는 最適의例가, 日本領事館敷地앞의 '③'의 도로인데, 일부가 日本領事館敷地에 편입된 甲지구의 134번에서 146번까지의 구역은 平地이며, 거기에도 충분히 도로를 낼 수 있는 상태임에도, 굳이 기존 도로를 그대로 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도, 木浦居留地에서의 두 가지의 결정요인에 街區의 구성을 생각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근거를 가지고도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日本領事館敷地 前面街區의 가로길이가 그것이다. 日本領事館의 前面에는 3개의 街區가 있는데, 그 가로길이가 서로 다르다. 3街區의 가로길이는, 서쪽의 街區부터 각각 65.9m, 68.9m, 79.2m이며, 그 사이의 도로폭은 10m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자 한다.

우선, 65.9m의 너비는, 日本領事館敷地의 서쪽 경계선과 '●'의 연장선에 의하여 정해진 街區의 너비와 일치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65.9m의 폭을 잡았다고 하자.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79.2m와 68.9m의 너비인데, 단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海關敷地의 서쪽경계선에 인접된 街區(빗금부분)의 가로길이를 충분히 잡기 위한 이유에서 비롯된 길이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海關敷地 서쪽街區의 가로길이는 34m인데, 만약 79.2m와 68.9m를 합친 街區를 2等分하면 약74m씩이 되어, 直線街路를 만들기 위해서는 28.2m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시가지의 計劃者⁶³⁾는, 이 28.2m라

63) 시가지의 계획은, 木浦의 개항준비에 앞서, 1896년 10월 同地를 방문하고 측량한 初代木浦海關長 W. 아루어(당시, 仁川海關技師)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계획자로 알려져 있는 木浦海關技師 스탠튼은 측량기사에 지나지 않고, 이미 이루어져 있던 시가지계획에 따라, 택지의 실지측량을 행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스탠튼의 木浦 첫방문은 1897년 11월 13일이어서, 그 時點에서는 시가지계획은 이미 끝난 후가 되기 때문이다. 木浦誌등의 기록에서는 스탠튼에 의해 시가지계획이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실은 그가 한 것은 宅地競貸를 위한 宅地分割의 측량이므로, 시가지계획까지 그

는 가로길이가 너무 좁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인 것이다. 또, 만약 3개街區의 너비를 균일하게 하면, 약 71.3m가 되어, 문제의 가로폭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 그래서, 해안부의 街區의 규모를 고려에 넣으면서, 위의 3街區의 폭을 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고찰하였듯이,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街區形態는, 西歐近代의 도시계획 또는 시가지계획의 훌륭한 理論이나 手法에 의해 구성되었다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經驗의 으로 自然地形이나 기존도로등의 기준의 條件에 맞춘 <1次的要因>과 그에 따라 자연히 결정되어진 <副次的要因>에 따라 전체시가지의 틀이 잡히고, 그 틀사이에서 최종적인 微調整이 이루어지는 街區構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7. 都市空間의 變化

7.1 居留地내의 中心性의 移動

街區의 계획에 따라, 宅地競貸가 이루어 지면서 시가지의 모습이 갖추어져 가는 木浦各國共同居留地는 거의 日本人一色의 거리가 된다. 그 居留民의 구성에서도 居留地會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居留地를 관리하는 면에서도 日本人의 시가지로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木浦居留地의 시가지의 用途별 구성은, 居留地로서의 가능을 확실하게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商業, 業務(官用, 民用), 창고, 공공시설등의 무역 및 그 관리에 관련된 기능들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무역관계의 사설이 만들어지는데, 좀더 지나서는 공용시설의 건설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밟고 있다.

木浦居留地에서의 시가지형성은, 당연하게도 서쪽지역의 甲지구에서 시작되어, 海壁의 건설에 이은 墙立의 진전에 따라 동쪽으로 전개되었다고 생각되어 진다. 택지경매의 실시결과(<그림 6>참

가 하였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木浦誌의 著者 같은 非專門家의 눈에는 그 두 가지의 작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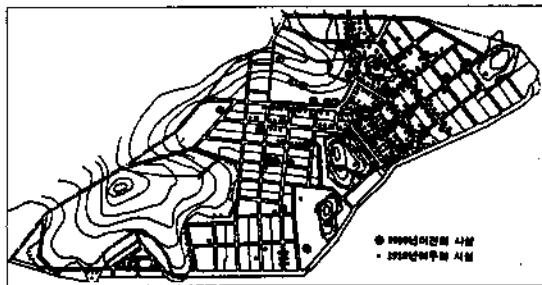


그림 12. 1910년 이전의 시설과 그 이후의 시설의 분포도

조)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서쪽지역을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12>는 1910년 이전의 시설과 그 이후의 시설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⁶⁴⁾인데, 1910년이전의 서쪽지역에서부터 그 이후에는『務安街道』로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商家の 정확한 위치등은 확인될 수 없지만, 開港초기에는 日本領事館의 全面地域으로 모이기 시작하여, 서서히 동쪽으로, 특히『嘉町』과『榮町』 및『務安街道』로 확대되어 감은, <그림 13>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추측가능한 일일 것이다.

木浦居留地에서는, 시가지시설의 건설이나 인구의 증가에 따라, 각 기능별로 群을 이루고 있었다. <그림 13>는 1921년이전의 각 시설의 名簿⁶⁵⁾에서 각 기능별로 같은 해의 시가도위에 프로트하여 그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開港초기에는 서쪽의 日本領事館의 全面地域을 중심으로 해안을 향하여 상업의 商家, 업무용의 오피스, 주택, 공장 및 창고가 위치하지만, 埋立工事의 완성에 따른 동쪽으로의 확장과 함께『榮町』과『福山町』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木浦居留지의 중심지역으로 변해 간다. 그 중심지역은, 港口와 朝鮮人마을을 연결하는 지역이 된다.

그것은, 무역을 위한 居留地를 생각하고, 居留地의 배후지역과의 밀접한 通商交流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韓國과 日本의 특수한 역사상황을 생각하면, 별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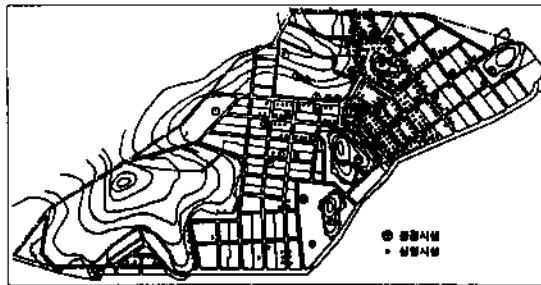


그림 13. 목포거류지시설의 기능별분포도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居留地가 植民地侵略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⁶⁶⁾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회에 他居留地를 포함한 종합적인 해석을 하기로 하자.

7.2 朝鮮人마을과隣接地域의 街區變化

다음의 지도 <그림 14>,<그림 15>,<그림 16>는, 각각 開港當時, 1910년, 1914년의 朝鮮人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북쪽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서로 비교하면, 이 지역의 街區構成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처음 朝鮮人마을과의 연결도로는『務安街道』가 유일한 것이었는데, 2,3개의 도로로 늘어 가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開港당시의 街區는 居留地안에서 완결되는 구성을 하고 있는 반면, 나중의 街區는 居留地에서 朝鮮人마을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 있다. 게다가, 최초 東西軸의 街區構成이 동쪽지역의 번영과 함께 南北軸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인 현상을 생각한다면 그 변화의 일반적 흐름은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65) 木浦商業會議所編, 「前掲書」, 1921.6.6, 목포를 참조.

66) 日本人學者도 「韓國併合은 居留地制度의 하나의 歸結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藤村道生, 「朝鮮の日本特殊居留地の起源について」, 「史學12,名古屋大文學部研究論集35號」, 1965.3, 名古屋, 2쪽을 참조.

64) 木浦商業會議所編, 「木浦案内」, 1921.6.6, 목포, 的別첨부록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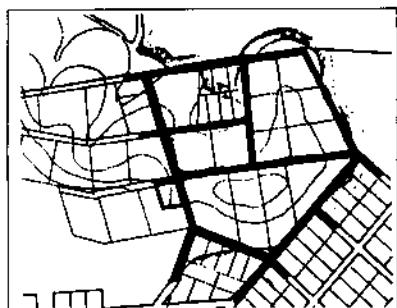


그림 14. 목포거류지 북쪽 지역의
가구형태 (개항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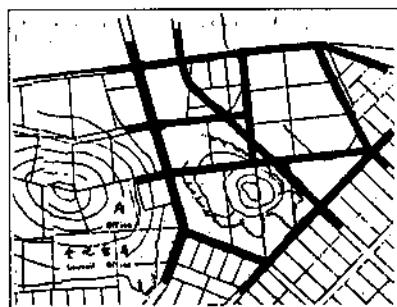


그림 15. 목포거류지 북쪽 지역의
가구형태 (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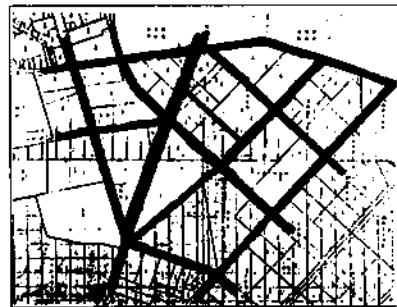


그림 16. 목포거류지 북쪽 지역의
가구형태 (1914년)

그런데, 이러한 考察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對象은, 居留地와의 관계에서 朝鮮人 마을의 대용과 변화, 그리고 居留地의 日本人 居留民에 의한 越域 행위, 居留地 외곽에서의 朝鮮人의 증가 등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이다. 다시 말해, 居留地의 설치에 의하여 기존의 朝鮮人 마을을 포함한 주변 지역이 어떠한 변화를 겪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명확하게 규명할 자료가 발굴되지 않고 있는 것이 現狀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今後의 課題로 明記해 두기로 한다.

8. 結

木浦各國共同居留地는, 日本居留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日本的 都市景觀을 이루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초의 都市空間의 기본형태는 朝鮮政府의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앞에서의 고찰에서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西歐近代의 도시계획의理論이나 手段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自然地形이나 기존의 도로 등의 기존의 조건에 따른 要因들에 의하여 시가지의 街區가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開港 이후의 居留地내의 中心性이 日本領事館數地의 前面地域에서, 점차 朝鮮人 마을과 가까운 동쪽지역으로 옮겨 가고, 더우기 内部完結의 開港初期의 시가지구성이 朝鮮人 마을과의 연계관계를 고려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居留地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木浦各國共同居留地는 朝鮮國 스스로의 宣言에 의하여 開港한 곳이면서도, 그 裏面에는 日本의 外交의 영향력과 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日本의 開港에 대한 先頭의 요구는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제사항을 규정하는 居留地章程을, 이전의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만들면서, 專管性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까지 마련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즉, 朝鮮政府의 自主의 대응에 의하여,共同居留地에 어울리는 居留地章程의 어휘이기는 하나 그 실제의 운용에서는 얼마든지 專管性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各國居留地會에의 권한집중이다. 各國居留地會는 거류민의 수에 의해 장악할 수 있는 조직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他國人の 거류를 공공연히 방해하여 自國人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各國居留地會의 장악은 간단한 것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日本領事館이외의 領事館은 설치되지도 않았고, 他國人의 居留民 또한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木浦各國共同居留地는 共同居留地라는 이름이 어색할 정도로 專管性이 강한, 日本專管居留地와 가까운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이것은 木浦各國共同居留地내에서 日本居留民의 전횡을 보장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 만 것이다.

日本의 居留地점거에 대한 욕구는, 居留地의 宅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시킨 海壁工事が 부실공사로 마무리되는 불상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것 또한 日本측이 居留地내의 택지확보에서 仁川各國共同居留地에서의 경험을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추진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結論的으로 말해, 各國共同居留地의 章程은 여러 국가에서 참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그 章程의 내용은 물론이고 실제의 운용도 정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경우는 명목적으로는 各國共同의 거류를 대상으로 한 지역이지만, 실제적으로는 日本人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章程 또한 專管居留地章程을 방불케 하는 내용으로 왜곡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왜곡은 당시의 國內外상황, 특히 通商貿易관계를 통찰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朝鮮政府에서는 그에 대한 고찰을 계울리 하지 않았을까, 현재의 우리도 반성해 볼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본 研究는 木浦各國共同居留地의 都市空間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韓國의 都市空間의 形成과정을 연구함에서 필요한 것은, 居留地라는 異質의 都市가 形成되는 것과 함께, 居留地의 인근지역, 즉 既存의 朝鮮人마을의 대응과 변화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都市史研究의 본래의 기능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장차의 課題로 명심하여 계속적인 研究를 진행할 것을 다짐한다.

< 참고문헌 >

- 孫禎陸, 「韓國開港期都市變化研究」, 일자사, 1982.10, 서울
 姜在彥, 「한국근대사」, 한울출판사, 1990.3, 서울
 渡學部編, 「朝鮮近代史」, 勤草書房, 1983.4, 東京
 山邊健太郎, 「日本韓併合小史」, 岩波書店, 1969.12, 東京
 奥平武彦, 「朝鮮の條約港と居留地」, 岩波書店, 1937.5, 東京
 木浦誌編纂會編, 「木浦誌」, 1914.3, 목포
 木浦府編, 「木浦府史」, 1930.12, 목포
 伊藤三千雄, 「外國人居留地域とその建築に関する研究」, 「東京大學大學院博士請求論文」, 1975.9, 東京
 木浦商業會議所編, 「木浦案内」, 1921.6, 목포
 藤村道生, 「朝鮮の日本特殊居留地の起源について」, 「史學12, 名古屋大文學部研究論集35號」, 1965.3, 名古屋
 各種 日本外務省記錄

A Study on the Process of the Urban Form in the Foreign Settlement at Mokpo

Yang, Sang Ho

(Lecturer of Myongji University and Kyongwon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is a historical research about the Foreign Settlement at Mokpo as the fourth among the Open Ports which express the historical characters of Korean Modern, as a city which did not exist before the Korean Modern. So I analyzed positively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the process of urban form during the period which contained the characters of Concession, from 1897 to 1910.

Even though the urban basic form of the Foreign Settlement at Mokpo was planned by Korean Goverment, it's townscape was changed to Japanese style by Japanese since Mokpo port was opened. Because it had settled by Japanese residents which had majority.

But I found that the urban form was not composed by the Modern urban planning theory or method, but by the existing conditions such as topography and roads. The center in the settlement had shifted from the front region of Japan Consulate to the East region which was in the vicinity of Korean village. And also former internal oriented urban form had changed to the relevant composition with Korean village.

All the changes in the Foreign Settlement at Mokpo was made by the Japanese which had majority, and it is a good example which expresses Korean Modern history.